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매뉴얼

— 평가위원용 —

2012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목 차

I. 서론

- 1. 추진배경 및 목적 8
- 2. 내용의 범위 8
- 3. 기대효과 9

II. 선정평가하기

- 1. 서면평가 12
 - 가. 평가준비 12
 - 나. 평가시스템 접속하기 13
 - 다. 평가서 작성 14
 - 라.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5
- 2. 공개발표평가 17
 - 가. 평가준비 18
 - 나. 평가시스템 접속하기 20
 - 다. 평가서 작성 20
 - 라.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21
 - 마. 질의응답 유의사항 및 사례 24
 - 사. 공개발표평가 대상과제 사례별 유형 분류 26
- 3. 정책부합성평가 27
 - 가. 평가준비 27
 - 나. 평가서 작성 29
 - 다.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30

Ⅲ. 중간평가하기

1. 중간(서면)평가	34
가. 평가준비	34
나. 평가서 작성	35
다. 평가서 작성 유의사항	36
2. 중간공개발표평가	38
가. 평가준비	39
나. 평가시스템 접속하기	40
다. 평가서 작성	41
라.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42
마. 질의응답 유의사항 및 사례	44

Ⅳ. 최종평가하기

1. 최종평가(공개발표평가)	48
가. 평가준비	48
나. 평가시스템 접속하기	50
다. 평가서 작성	51
라.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52
마. 질의응답 유의사항 및 사례	54

Ⅴ. 참고자료(작성 예시)

1. 지정공모과제(서면평가) 선정평가 작성예시	58
2. 지정공모과제(공개발표평가) 선정평가 작성예시	72
3. 지정공모과제(정책부합성평가) 선정평가 작성예시	83

4. 자유응모과제(서면평가) 선정평가 작성예시	88
5. 자유응모과제(공개발표평가) 선정평가 작성예시	99
6. 자유응모과제(정책부합성평가) 선정평가 작성예시	111
7. 연구사업단(서면·공개평가서) 선정평가 작성예시	117
8. 연구사업단(정책부합성평가) 선정평가 작성예시	126
9. 중간서면평가 작성예시	132
10. 중간공개발표평가 작성예시	141
11. 최종평가 작성예시	151

표 목 차

표 II-1. 평가점수 부여 시 기준	15
표 II-2. 평가점수 총점 부여 시 기준	16
표 II-3. 공개발표평가 평가서 항목 및 가중치	19
표 II-4. 평가점수 부여 시 기준	22
표 II-5. 평가점수 총점 부여 시 기준	22
표 II-6.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신청과제 유형	26
표 II-7. 사업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신청과제 유형	27
표 II-8. 정책부합성평가 평가서 항목 및 가중치	29
표 II-9. 평가점수 부여 시 기준	30
표 II-10. 평가점수 총점 부여 시 기준	31
표 III-1. 평가점수 부여 시 기준	37
표 III-2. 평가점수 총점 부여 시 기준	37
표 III-3. 지정공모/자유응모과제 평가서 항목 및 가중치	40
표 III-4. 평가점수 부여 시 기준	43
표 III-5. 평가점수 총점 부여 시 기준	43
표 IV-1. 지정공모/자유응모과제 최종평가 평가서 항목 및 가중치 ·	50
표 IV-2. 평가점수 부여 시 기준	52
표 IV-3 . 평가점수 총점 부여 시 기준	53

I. 서론

1. 추진배경 및 목적

연구개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법령의 제·개정¹⁾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 일부 개정(2011. 3.28.)되었으며 관련 부처는 개정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동관리규정의 개정²⁾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과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수준 높은 연구 과제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이 확대, 다양화³⁾됨에 따라 과제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매뉴얼(2010.10.)은 있지만 평가위원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지침이 부재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에서 평가위원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명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내용의 범위

본 매뉴얼은 평가위원에 해당되는 선정 시 과제평가, 선정 후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평가기준과 평가서 작성 방법 등에 한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의 변화 : (2009년) 1개 사업, 885억원 → (2010년) 4개 사업, 1,092억원 → (2011년) 7개 사업, 1,339억원 → (2012년) 9개 사업, 1,495억원

3. 기대효과

본 매뉴얼의 학습을 통하여 평가위원의 평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업무를 이해하고, 평가의 객관성 측면에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우수한 과제를 발굴·지원할 수 있으며 도출되는 연구 결과는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II. 선정평가하기

전체 개요

본 장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중 생명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선정평가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융복합센터지원사업의 경우 별도의 선정평가 체계에 따라 실시합니다.

선정평가는 (1단계) 비밀서면평가(45%), (2단계) 공개발표평가(45%), (3단계) 정책부합성평가(10%)의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 평가 결과 평균점수 60점미만은 탈락되어 다음단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각 단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계산합니다.

연구과제평가단(평가위원)은 1단계(비밀서면평가)·2단계(공개발표평가) 각각 별도로 구성하며, 과제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기평 과제분류체계에 등록된 전문가중에서 소분류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평가위원 후보군을 구성한 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확정합니다. 우선순위가 확정된 평가위원 후보에 대해 농기평 사업담당자가 유선으로 평가위원 수락여부를 확인한 후 평가위원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3단계(정책부합성평가)는 과제의 정책부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농식품부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활용담당관이 공개발표 시 참여하여 동시에 평가를 실시합니다.

1. 서면평가

서면평가는 접수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선행특허조사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인터넷 평가를 실시합니다.

가. 평가준비

서면평가에서는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대상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소속기관(연구자) 인적사항

등을 익명화하여 평가자에게 제공합니다. 서면평가 기간은 10일 이내로 실시하여 평가위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기평은 서면평가 전에 피평가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원 및 유관기관의 수행과제와의 상호 검토를 통해 연구내용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위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평가시 반드시 유사중복성 검토결과를 확인 후 (첨부자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시스템 접속하기

농기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평가대상과제를 평가 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 고> 서면평가 방법

1.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접속
2. 메인화면의 “R&D 연구마당” 배너 클릭 후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3. 로그인 후 R&D 연구마당 상단의 “평가” 메뉴 클릭
 - * R&D 연구마당 최초 접속시 공고/접수 화면이 보여집니다
 - * “평가” 메뉴로 이동하면 평가대상 사업을 확인할 수 있음
4. 평가대상 사업명을 클릭하여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으로 이동
 - * 평가시스템 최초 접속시 “서약서 작성”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평가대상과제” 화면이 보여집니다.
 - * 과제정보 클릭시 연구과제 기본정보 확인 가능
 - * 연구개발계획서 클릭하여 평가대상 과제의 계획서(PDF파일) 내용 확인
 - * 과제명 클릭시 연구과제 평가점수/평가의견 입력 가능
 - * NTIS활용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및 신청서 미비사항 클릭 후 검토
 - * 평가를 완료하려면 평가점수 입력 화면 하단의 평가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되며, 평가완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다. 평가서 작성

평가위원은 인터넷 평가시스템에 접속 후 연구개발계획서 및 참고자료를 검토한 후 평가서(종합평가, 의견평가)를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서의 구성은 평가점수를 기재하는 종합평가와 평가의견을 기재할 수 있는 의견평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합평가는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적 평가방법입니다. 평가시스템에서 평가항목별로 0점~5점 내외로 평가점수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항목별 가중치는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의견평가는 종합평가를 통해 점수를 부여한 후 “연구팀 및 연구내용의 조정의견”, “유사·중복성 의견”, “연구비·연구기간의 적절성” 등의 의견을 기재 합니다.

평가서 작성은 온라인 평가시스템에서 각 평가 항목별1,000자 이내로 평가의견을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평가의견은 내용의 수정 및 가감없이 그대로 피평가자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검토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 고> 의견평가서 구성

- 지정공모과제 : 2. 조정의견(연구내용, 연구팀 등), 3. 유사·중복 조정 의견, 4.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 사정
- 자유응모과제 : 2.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3. 과제선정 제외 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4. 유사·중복성에 대한 의견, 5. 적정 연구 개발비 및 기간사정

전체 평가항목의 내용입력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평가 중간

에 임시저장을 하여 추후(평가기간중) 수정 및 보완 할 수 있으며, 평가 완료 후 평가 최종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평가가 종료되며 이후 평가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라.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종합평가(점수제 입력) :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기준

지정공모과제는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능력’, ‘기술개발 추진전략’,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특성’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세부평가내용은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응모과제는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세부평가내용은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항목·세부평가내용별로 6점 척도(0~5점)로 평가하고, 평가점수 부여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II-1 . 평가점수 부여 시 기준

점 수	기준내용
5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매우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4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전반적으로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3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부만 해당되고, 연구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세부평가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연구수행을 할 경우 기술개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과제

평가총점 부여 시 평가서의 평가항목, 세부내용, 가중치를 확인한 후 평가를 실시하되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정이 필요한 과제로 판단될 경우 60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표 II-2 . 평가점수 총점 부여 시 기준

점 수	기준내용
90점 이상	연구개발의 혁신성이 매우 높고, 경제·사회적 활용가능성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연구목표 및 수행방법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과제
80점~90점	연구개발의 혁신성 및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높으나 연구방법론 및 과제의 구성에서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
60~80점	연구개발의 혁신성은 다소 떨어지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60점 미만	연구개발의 혁신성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연구방법론 및 과제구성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의견평가 : 지정공모(조정의견 등)/자유응모(과제선정·제외 시 의견)

기존 연구와 제목은 유사하나 내용이 다를 경우, 중복의 오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연구제목의 구체화 및 차별화²⁾ 할 수 있도록 의견의 제시가 가능합니다. 선정의견이라 할지라도 연구가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너무 세세한 사항이나 중요도가 낮거나 협약 시 행정적으로 처리할

2) 제목에 연구내용, 방법, 목표가 나타나게 작성보완

수 있는 내용은 조정의견 또는 보완사항에서 배제하여도 됩니다. 선정제의 대상과제(60점 미만)는 기술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제외사유를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의견평가 : 유사 중복성에 대한 의견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연구제목, 연구방법론 등은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중복으로 판단되는 과제는 중복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4) 의견평가 : 적정연구비·기간의 적정성

연구개발계획서를 통하여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기간 및 연구비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검토하여 제외로 분류한 과제라도 타 평가자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점수에 의하여 과제의 선정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과제에 대한 적정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공개발표평가

서면평가에서 60점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대상이 되며, 평가위원이 과제제안자의 구두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는 대면평가입니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동일한 인터넷 온라인평가로 실시하게 됩니다.

가. 평가준비

공개발표평가는 농기평에서 사전에 공지한 평가장에서 평가위원 모두가 함께 모여 평가에 임하게 되므로 평가시간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평가장 입실 시 평가위원 신분확인(신분증 등)후 사전 배정된 자리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농기평 과제담당자는 해당과제의 평가일정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10분간 실시하게 됩니다.

<참 고> 평가 시간

- 연구사업단/지정공모과제 : 발표평가시간은 과제별 90분(구두발표 40분, 질의응답 40분, 평가서 작성 10분)
- 자유응모과제 : 발표평가시간은 과제별 60분(구두발표 20분, 질의응답 30분, 평가서 작성 10분)

평가위원은 평가원에서 사전에 제공한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의견서, 공개발표 유인물 등을 숙지한 상태에서 공개발표평가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위원은 공개발표평가일 전에 배포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보완요구사항 및 질의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공개발표평가 청취 및 질의·응답 후 평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 의견서) 평가위원은 농기평에서 사전에 제공한 유관기관, 특허정보원 등의 유사중복성, 특허정보 등 관련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연구자를 통하여 확인 하는 등 평가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개발표 유인물) 공개발표평가 시 제공하는 유인물은 연구개발계획서와 병행하여 검토한 후 평가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 고> 공개발표 유인물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표 및 내용 : 총괄목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 성과목표 제시 · 선행연구 내용 : 과제와 관련된 연구진의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 등 제시 · 연구 추진방법 및 전략 : 추진방법 및 전략 구체적 제시/실용화, 산업화 전략 제시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핵심기술의 특징,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3P (논문, 특허, 상품)분석결과 · 기대효과 :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 등 제시

표 II-3. 공개발표평가 평가서 항목 및 가중치

구분	종합평가(가중치)	의견평가
지정 공모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4) · 기술개발수행능력(5) · 기술개발추진전략(3) ·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의견(연구내용, 연구팀 등) · 유사 · 중복 조정의견 · 적정 연구개발비 및 기간산정
자유 응모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5) ·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3) ·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 과제선정 제외 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 유사 · 중복 조정의견 · 적정 연구개발비 및 기간산정
연구 사업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우수성(5) · 연구사업단 운영의 적정성(5) · 기대효과(6) · 대응자금 규모(2) · 사업단 특성(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연구개발비 및 기간산정 · 종합의견

평가준비가 완료된 후 주관연구책임자의 구두발표(PPT)에 의해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의 순서는 구두발표, 질의응답, 평가서 작성으로 진행됩니다.

나. 평가시스템 접속하기

평가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농기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 고> 공개발표평가 방법

1.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접속
2. 메인화면의 “R&D 연구마당” 배너 클릭 후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3. 로그인 후 R&D 연구마당 상단의 “평가” 메뉴 클릭
 - * R&D 연구마당 최초 접속시 공고/접수 화면이 보여집니다
 - * “평가” 메뉴로 이동하면 평가대상 사업을 확인할 수 있음
4. 평가대상 사업명을 클릭하여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으로 이동
 - * 평가시스템 최초 접속시 “서약서 작성”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평가대상과제” 화면이 보여집니다.
 - * 과제정보 클릭시 연구과제 기본정보 확인 가능
 - * 연구개발계획서 클릭하여 평가대상 과제의 계획서(PDF파일) 내용 확인
 - * 과제명 클릭시 연구과제 평가점수/평가의견 입력 가능
 - * NTIS활용 유사중복성 검토결과 및 신청서 미비사항 클릭 후 검토
 - * 평가를 완료하려면 평가점수 입력 화면 하단의 평가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되며, 평가완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다. 평가서 작성

과제별 평가서는 인터넷 평가시스템에 접속 후 발표와 질의·답변이 끝난 과제에 대해서 평가서(종합평가, 의견평가)를 작성하면 됩니다. 평가서 구성은 검토결과를 점수로 기재하는 종합평가와 평가의견을 기재할 수 있는 의견평가로 구분됩니다. 종합평가는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적 평가방법입니다. 인터넷 평가시스템에서 평가항목별로 0점~5점 이내로 평가 점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

하여 점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의견평가는 종합평가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고 연구팀 및 연구내용의 조정의견, 유사·중복성 의견, 연구비·연구기간의 적절성 등의 의견을 기재하는 정성적 평가방법입니다. 평가의견은 각 평가 항목별 1,00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평가점수(종합평가)에 관계없이 의견평가의 모든 항목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 고> 의견평가서 구성

- 지정공모과제 : 2. 조정의견(연구내용, 연구팀 등), 3. 유사·중복 조정의견, 4.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 사정
- 자유응모과제 : 2.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3. 과제선정 제외 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4. 유사·중복성에 대한 의견, 5. 적정 연구개발비 및 기간사정

평가결과 입력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 중간에 임시저장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최종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평가가 종료됩니다.

라.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종합평가(점수제 입력) :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기준

지정공모과제는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능력’, ‘기술개발 추진전략’,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특성’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세부평가내용은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응모과제는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 세부평가내용은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항목·세부평가내용별로 6점 척도(0~5점)로 평가를 실시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II-4. 평가점수 부여 시 기준

점수	기준내용
5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매우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4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전반적으로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3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부만 해당되고, 연구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세부평가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연구수행을 할 경우 기술개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과제

평가총점 부여 시 평가서의 평가항목, 세부내용, 가중치를 확인한 후 평가를 실시하되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정이 필요한 과제로 판단될 경우 60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표 II-5 . 평가점수 총점 부여 시 기준

점 수	기준내용
90점 이상	연구개발의 혁신성이 매우 높고, 경제·사회적 활용가능성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연구목표 및 수행방법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과제
80점~90점	연구개발의 혁신성 및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높으나 연구방법론 및 과제의 구성에서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
60~80점	연구개발의 혁신성은 다소 떨어지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60점 미만	연구개발의 혁신성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연구방법론 및 과제구성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의견평가 : 지정공모과제(조정 의견 등)/자유응모과제(과제 선정·제외 시 의견)

기존 연구와 제목은 유사하나 내용이 다를 경우, 중복의 오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연구제목의 구체화 및 차별화³⁾ 할 수 있는 의견작성이 필요합니다. 선정의견이라 할지라도 연구가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너무 세세한 사항이나 중요도가 낮거나 협약 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은 조정의견 또는 보완사항에서 배제하여도 됩니다. 선정 제외 대상과제(60점 미만)는 기술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제외사유를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의견평가 : 유사 중복성에 대한 의견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의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연구제목, 연구방법론 등은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중복으로 판단되는 과제는 중복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4) 의견평가 : 적정연구비·기간의 적정성

과제에서 신청한 연구기간 및 연구비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 60점 미만으로 제외되는 경우이더라도 적정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제목에 연구내용, 방법, 목표가 나타나게 작성보완

마. 질의응답 유의사항 및 사례

평가위원은 질의·응답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의 세부전공분야가 아니라서”라는 표현과 발표자를 비하하는 “잘 모르시나본데”라는 표현은 지양하고, 평가위원의 소속(직책)이 공개되지 않도록 “앞선 평가위원의 의견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발표자는 평가받는 입장이므로 긴장하거나 흥분할 수 있으므로, 언쟁을 피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로 질의를 하면서도 엄정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 ③ 발표자의 무성의하거나 공격적인 답변이나 행동에도 흥분하지 않도록 인내심 발휘를 부탁드립니다.
- ④ 발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배려, 훈계 또는 질타 차원의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⑤ 배정된 평가시간과 타 평가위원의 질문기회를 고려하여 요지를 간략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⑥ 평가위원의 질의내용이나 발표자의 답변에 대하여 편들거나 반박하는 의견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⑦ 중요한 수정·보완사항은 질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연구진 입장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불만사례

- 과제를 떨어뜨리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경우
 - 연구진 답변에 평가위원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평가위원이 질문을 독점하거나 주고 받기식의 질문이 계속되는 경우
 - 연구진의 답변에 대하여 평가자들이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 평가위원 상호간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경우 또는 옆에 앉은 평가위원 간에 소곤소곤 대화하거나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
 - 다음에 과제를 내더라도 이런 저런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는 발언
- 발표자의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경우
 - 질문내용이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장황하고 혼계조인 경우
 - 연구진의 답변 중에 평가위원이 답변 종단을 요구하거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꼬리는 무슨 질문이 계속되는 경우
- 질문사항이 평가의 본질에서 벗어난 경우
 - 이 연구 끝나면 국내 농식품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냐?
 - 사업 목적이 맞지 않다. 지난번에 평가받은 과제와 같은 것 아니냐?
 - 외국에서 다된 것 아니냐? 현장에서 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 연구 과제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 데 연구비가 부족하냐?
 -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왜 정부에 손 벌리느냐?
 - 연구 다 해놓고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 솔직한 얘기인데 안 되는 것 잘 아시죠?

또한 농기평 사업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를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로 질의·응답 시 질문 없음으로 일관, 평가 중 개인 전화통화, 수시로 평가장의 입·퇴실 반복, 의견평가 항목을 “의견 없음”으로 작성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담당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는 질의 시 사업담당자의 진행을 무시하고 장시간 질문을 하거나 타 평가위원의 질의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 공개발표평가 대상과제 사례별 유형 분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신청과제는 기술의 혁신성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활용성이 높은 과제가 해당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표 II-6.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신청과제 유형

구분	유형내용
기술의 혁신성이 높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적 및 경제사회적 흐름으로 보아 연구기간 내에 실용화, 산업화는 어렵지만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등을 확보할 경우 연구종료 후 4~5년(연구성과 관리기간) 이내에는 기술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유형 · 아직 시장은 형성되지 않는 않지만 경제사회적 흐름으로 보아 4~5년 이내에는 시장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형 · 현 과학기술적 수준으로 보아 실패할 위험이 상존하지만 일단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기술수명이 대단히 길고 파급효과가 큰 부류, 기술(또는 제품)의 수요가 국내시장에 제한되지 않고 해외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유형 ·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는 목적이나 방법이지만, 성공할 경우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되며 1~2년 내에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유형
경제·사회적 활용성이 높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면 곧 사업화로 진행될 수 있는 유형 · 고도의 과학기술성은 요구되지 않으나, 아이디어가 참신하여 단기간에 시장을 형성하거나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유형 · 연구개발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기술개발 기간이 긴 것에 비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은 기술로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후반부 실용화 검증단계를 지원하면 곧 성과가 있는 유형

사업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신청과제로는 연구방법론 및 과제구성 요건의 합리성이 낮거나 경제·사회적 활용성이 낮은 과제가 해당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표 II-7 . 사업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신청과제 유형

구분	유형내용
연구 방법론 및 과제 구성의 요건의 합리성이 낮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표와 범위가 광범위하고, 연구개발 내용과 방법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연구성과와 이의 활용을 예측하기 불가능한 유형 · 이미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정설이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유형 · 극히 기초연구에 치우치고, 결과의 응용 방향이나 응용목적이 불분명하여 활용성이 결여됨에 따라 사업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제·사회적 활용성이 낮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반복적인 샘플 채취, 분리, 분석 등이지만, 그 결과가 실용화, 산업화와 연계성이 극히 낮은 유형 · 현 상황에서는 연구개발 필요성이 있으나, 기술의 발전 속도와 경제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서는 그 필요성이 급속히 감소하거나, 기술가치가 소멸되어 실용화·산업화가 불가능한 유형 · 이미 좁은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 뿐 만 아니라, 유사한 제품류가 다수 개발되어 산업화, 실용화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 주자로서 실용화, 산업화가 극히 어렵거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유형 · 유사한 영역의 연구개발이 다수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으나, 현장의 문제해결에 활용되지 못하였으며, 현장의 문제해결수단이 기술 외적인 부분에 의존성이 큰 유형

3. 정책부합성평가

정책부합성평가는 농식품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평가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정책부서에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가. 평가준비

정책부합성평가는 농식품부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활용담당관이 공개발표평가 시 실시하게 됩니다. 정책부합성평가는 대면 평가로서 농기평에서 공지한 평가장으로 30분전까지 도착하면 됩니다. 평가장 입실을 완료한 후 평가위원 신분확인(신분증 등) 후 사전 배정된 자리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농기평 과제담당자는 해당과제의 평가일정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10분간 실시하게 됩니다.

<참 고> 발표 시간

- 사업단/기획과제 : 발표평가시간은 과제별 90분(구두발표 40분, 질의응답 40분, 평가서 작성 10분)
- 일반과제 : 발표평가시간은 과제별 60분(구두발표 20분, 질의응답 30분, 평가서 작성 10분)

농식품부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활용담당관은 정책부합성평가 실시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의견서, 공개발표 유인물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농식품부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활용담당관은 공개발표평가일 전에 배포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보완사항 및 질의사항은 사전에 준비하고, 공개발표평가 청취 및 질의·응답 후 평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의견서) 농식품부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활용담당관은 농기평에서 유관기관, 특허정보원 등을 통해 검토한 자료를 검토 후 평가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개발표유인물) 공개발표평가 시 제공하는 유인물은 연구개발계획서와 병행하여 검토한 후 평가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 고> 공개발표 유인물 구성요소

- 연구목표 및 내용 : 총괄목표, 연차별 목표 및 내용 / 성과목표 제시
- 선행연구 내용 : 과제와 관련된 연구진의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 등 제시
- 연구 추진방법 및 전략 : 추진방법 및 전략 구체적 제시/실용화, 산업화 전략 제시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핵심기술의 특징,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3P (논문, 특허, 상품)분석결과
- 기대효과 : 경제적, 기술적 파급 효과 등 제시

표 II-8 . 정책부합성평가 평가서 항목 및 가중치

구분	종합평가(가중치)	의견평가
지정공모과제/연구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6) · 농어업 현장정책과의 연계성(8) ·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6) 	· 평가의견
자유응모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의 충실성(6) · 농어업 현장정책과의 연계성(8) ·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6) 	· 평가의견

평가준비가 완료된 후 주관연구책임자의 구두발표(PPT)에 의해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는 구두발표, 질의 응답, 평가서 작성으로 진행됩니다.

나. 평가서 작성

과제별 평가서는 아래와 같이 농기평 홈페이지(R&D 연구마당)에 접속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 고> 정책부합성평가 방법

1.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접속
2. 메인화면의 “R&D 연구마당” 배너 클릭 후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3. 로그인 후 R&D 연구마당 상단의 “평가” 메뉴 클릭
 - * R&D 연구마당 최초 접속시 공고/접수 화면이 보여집니다
 - * “평가” 메뉴로 이동하면 평가대상 사업을 확인할 수 있음
4. 평가대상 사업명을 클릭하여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으로 이동
 - * 평가시스템 최초 접속시 “서약서 작성”페이지로 이동됨
 - * 연구개발계획서 클릭하여 평가대상 과제의 계획서(PDF파일) 내용 확인
 - * 과제명 클릭시 연구과제 평가접수/평가의견 입력 가능
 - * 평가를 완료하려면 평가접수 입력 화면 하단의 평가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되며, 평가완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다.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정책부합성평가는 지정공모과제/연구사업단/자유응모과제 모두 1개 항목 3개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항목·세부평가내용별로 6점 척도(0~5점)로 평가를 실시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II-9. 평가점수 부여 시 기준

점수	기준내용
5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매우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4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전반적으로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3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부만 해당되고, 연구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세부평가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연구수행을 할 경우 기술개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과제

평가총점 부여 시 평가서의 평가항목, 세부내용, 가중치를 확인한 후 평가를 실시하되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정이 필요한 과제로 판단될 경우 60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표 II-10. 평가점수 총점 부여 시 기준

점수	기준내용
90점 이상	연구개발의 혁신성이 매우 높고, 경제·사회적 활용가능성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연구목표 및 수행방법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과제
80점~90점	연구개발의 혁신성 및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높으나 연구방법론 및 과제의 구성에서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
60~80점	연구개발의 혁신성은 다소 떨어지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60점 미만	연구개발의 혁신성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연구방법론 및 과제구성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의견은 대상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구두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종합평가를 통해 작성하여야 합니다. 선정 또는 선정 제외 시 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Ⅲ. 중간평가하기

전체 개요

본 장은 농림수산물 연구개발사업 중 생명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중간평가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중간평가는 (1단계) 중간서면평가, (2단계) 중간공개발표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중간서면평가는 진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 전년도까지 진도상황을 점검하는 평가로서 인터넷 서면평가 방법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중간서면평가를 통해 종합점수가 60점 미만과제로 평가되었거나, 6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더라도 하위 20%에 해당하는 과제는 “중단”조치됩니다.

2단계 중간공개발표평가는 중간서면평가에서 “중단”조치된 과제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개발표를 통해 중간서면평가 결과에 대해 소명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중간공개발표를 통해 소명한 과제 중 최종적으로 50% 이상은 “중단”조치가 확정이 됩니다.⁴⁾

1. 중간(서면)평가

중간(서면)평가는 연구종료 1년 전까지 매년 연구수행실적을 평가하는 진도평가 개념으로서 연차실적·계획서의 연구수행실적 및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은 온라인 서면평가를 실시합니다.

가. 평가준비

평가시스템에 첨부된 연차실적·계획서⁵⁾를 기초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중간서면평가 기간은 10일 이내로 평가위원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중간공개발표평가 대상과제가 10과제인 경우 최종적으로 5과제 이상은 중단 조치

5) 연구팀이 연차별 연구종료 2개월 전에 제출한 서류를 말함

농기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평가대상과제를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 고> 중간서면평가 방법

1.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접속
2. 메인화면의 “R&D 연구마당” 배너 클릭 후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3. 로그인 후 R&D 연구마당 상단의 “평가” 메뉴 클릭
 - * R&D 연구마당 최초 접속시 공고/접수 화면이 보여집니다
 - * “평가” 메뉴로 이동하면 평가대상 사업을 확인할 수 있음
4. 평가대상 사업명을 클릭하여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으로 이동
 - * 평가시스템 최초 접속시 “서약서 작성”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평가대상과제” 화면이 보여집니다.
 - * 과제정보 클릭시 연구과제 기본정보 확인 가능
 - * 연차실적계획서 클릭하여 평가대상 과제의 계획서(PDF파일) 내용 확인
 - * 과제명 클릭시 연구과제 평가점수/평가의견 입력 가능
 - * 평가를 완료하려면 평가점수 입력 화면 하단의 평가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되며, 평가완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나. 평가서 작성

평가위원은 인터넷 평가시스템에 접속 후 연차실적·계획서를 검토하신 후 평가서(종합평가, 종합검토의견)를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서는 점수제로 평가하는 종합평가와 평가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종합검토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합평가는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적 평가방법입니다. 인터넷 평가시스템에서 평가항목별로 0점~5점 내외로 평가점수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가 합산되므로 가중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은 종합평가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고 연구과제의 유사·중복성 검토, 종합적 조치(계속수행, 조기완료, 중단) 등

의 구체적인 의견을 기재하는 평가방법입니다.

평가서 작성은 온라인 평가시스템에서 각 평가 항목별 1,000자 이내로 평가의견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평가점수(종합평가)에 관계없이 의견평가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참 고> 종합검토의견 구성

- 지정공모과제/자유응모과제/사업단 공통
 - 연구과제의 유사·중복성 검토의견
 - 종합적 조치(계속수행, 조기완료, 중단(성실, 불성실))
 - 계속수행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조기완료, 중단 시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전체 평가항목의 내용입력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평가 중간에 임시저장을 하여 추후(평가기간중) 수정 및 보완 할 수 있으며, 평가 완료 후 평가 최종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평가가 종료되며 이후 평가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다. 평가서 작성 유의사항

1) 종합평가(점수제 입력) :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기준

지정공모과제/자유응모과제/사업단과제 모두 ‘연구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 ‘사업의 특성’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세부평가내용은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항목·세부평가내용별로 6점 척도(0~5점)로 평가하고, 평가점수 부여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III-1. 평가점수 부여 시 기준

점 수	기준내용
5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매우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4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전반적으로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3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부만 해당되고, 연구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부여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세부평가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연구수행을 할 경우 기술개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과제

평가총점 부여 시 평가서의 평가항목, 세부내용, 가중치를 확인한 후 평가를 실시하되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정이 필요한 과제로 판단될 경우 60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표 III-2. 평가점수 총점 부여 시 기준

점 수	기준내용
90점 이상	연구개발의 혁신성이 매우 높고, 경제·사회적 활용가능성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서 연구목표 및 수행방법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과제
80점~90점	연구개발의 혁신성 및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높으나 연구방법론 및 과제의 구성에서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
60~80점	연구개발의 혁신성은 다소 떨어지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60점 미만	연구개발의 혁신성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연구방법론 및 과제구성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의견평가 : 유사 중복성에 대한 의견

평가위원은 평가대상 과제에 연구성과가 타 연구와 중복되는 결과가 예상될 경우 연구방법론 등을 조정하거나 차별화 할 수 있도록 의견의 제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복으로 판단되는 과제는 중복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 단, 연구방법론을 조정하더라도 중복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중단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평가 : 종합적 조치

종합평가 결과 60점 이상이면서 계속적인 연구 및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한 과제인 경우 계속수행으로 체크하고 그 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발목표가 타 연구에서 달성되어 당초의 연구기간을 단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조기완료로 체크하고 그 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평가 결과 60점 미만이면서 종합검토의견 중 연구수행 결과가 중단으로 판단되는 과제는 중단으로 체크하고 그 사유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중간공개발표평가

중간공개발표평가는 중간서면평가에서 60점 미만인 과제로 “중단”으로 통보되었거나 “계속”으로 평가되었으나 하위 20%이상에 해당되는 과제 중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이의제기가 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책임자의 구두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는 대면평가입니다.

가. 평가준비

중간공개발표평가는 대면평가로서 농기평에서 사전에 공지한 평가장에서 평가위원 모두가 함께 모여 평가에 임하게 되므로 평가시간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평가장 입실 시 평가위원 신분확인(신분증 등)후 사전 배정된 자리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농기평 과제담당자는 해당과제 평가일정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10분간 실시하게 됩니다.

<참 고> 평가 시간

- 사업단/지정공모과제 : 발표평가시간은 과제별 80분(구두발표 30분, 질의응답 40분, 평가서 작성 10분)
- 자유응모과제 : 발표평가시간은 과제별 60분(구두발표 20분, 질의응답 30분, 평가서 작성 10분)

평가위원은 평가원에서 사전에 제공한 중간평가 이의신청서, 연차실적계획서, 공개발표 유인물 등을 숙지한 상태에서 공개발표평가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중간평가 이의신청서 및 연차실적계획서) 평가위원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작성한 이의신청 내용의 요점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성과(1년간)와 차년도 연구계획을 기술한 연차실적계획서와 비교검토를 통해 이의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개발표 유인물) 공개발표평가 시 제공하는 유인물은 공개발표 시 사전에 준비된 관련서류(이의신청서, 연차실적계

획서)와 병행하여 검토한 후 평가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p><참 고> 공개발표 유인물 구성요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표 및 내용 : 총괄, 세부 및 협동과제별 연구목표 및 내용 제시 · 연구수행 결과 및 당초 목표대비 달성도 제시 : 세부, 협동과제별 연구수행결과 제시, 당초 목표대비 달성도 제시 · 연구성과 제시(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 제시) :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 · 차년도 연구계획 제시 :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 제시, 차년도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전략 제시(연구팀 포함)
--

표 III-3. 지정공모/자유응모과제 평가서 항목 및 가중치

종합평가(가중치)	의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4) ·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6) ·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10) · 사업의 특성(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명내용에 대한 의견 · 종합적 조치

평가 준비가 완료된 후 주관연구책임자의 구두발표(PPT)에 의해서 중간공개발표평가가 실시됩니다. 평가는 구두발표, 질의응답, 평가서 작성으로 진행됩니다.

나. 평가시스템 접속하기

평가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농기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 고> 중간공개발표평가 방법

1.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접속
2. 메인화면의 “R&D 연구마당” 배너 클릭 후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3. 로그인 후 R&D 연구마당 상단의 “평가” 메뉴 클릭
4. 평가대상 사업명을 클릭하여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으로 이동
 - * 평가시스템 최초 접속시 “서약서 작성”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차실적계획서 클릭하여 평가대상 과제의 계획서(PDF파일) 내용 확인
 - * 과제명 클릭시 연구과제 평가점수/평가의견 입력 가능
 - * 평가를 완료하려면 평가점수 입력 화면 하단의 평가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되며, 평가완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다. 평가서 작성

과제별 평가서는 인터넷 평가시스템에 접속 후 발표와 질의·답변이 끝난 과제에 대해서 평가서(종합평가, 의견평가)를 작성하면 됩니다. 평가서의 구성은 검토결과를 점수로 기재하는 종합평가와 평가의견을 기재할 수 있는 의견평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는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내용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를 부여하는 정량적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시스템에서 평가항목별로 0점~5점 이내로 평가점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가 계산됩니다. 의견평가는 종합평가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고 소명내용에 대한 의견, 종합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는 평가방법입니다. 평가의견은 각 평가항목별 1,00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평가점수(종합평가)에 관계없이 의견평가의 모든 항목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 고> 의견평가서 구성(지정공모/자유응모 공통)

2. 소명내용에 대한 의견

- 소명한 내용이 정당한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소명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3. 종합적 조치

- 계속수행 조기완료 중단(성실, 불성실)
- 계속수행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조기완료, 중단 시 현장조사가 필요한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조기완료, 중단 시 그 이유에 관한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전체 평가항목의 내용입력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평가 중간에 임시저장을 하여 추후(평가기간중) 수정 및 보완 할 수 있으며, 평가 완료 후 평가 최종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평가가 종료되며 이후 평가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라.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종합평가(점수제 입력) :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기준

지정공모/자유응모과제는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 ‘사업의 특성’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세부평가내용은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항목·세부평가내용별로 6점 척도(0~5점)로 평가를 실시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III-4. 평가점수 부여 시 기준

점수	기준내용
5점 부여	연차실적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매우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4점 부여	연차실적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전반적으로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3점 부여	연차실적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부여	연차실적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부만 충족되고 지속적인 연구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부여	연차실적계획서의 내용이 각 항목별 세부평가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부여	연차실적계획서의 내용과 세부평가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구수행을 할 경우 기술개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과제

평가서의 평가항목, 세부내용, 가중치를 확인한 후 평가를 실시하되,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평가 총점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표 III-5. 평가점수 총점 부여 시 기준

점수	내용
60점 이상 평가	소명내용이 타당하고 연구수행 목표 중간달성도, 사전에 수립된 전략 대비 실행정도가 적정하고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가 당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
60점 미만 평가	연구수행 목표, 중간달성도, 연구수행전략의 적정성에 대한 소명은 이루어졌으나 환경변화에 따라 당초 목적인 성과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
50점 미만	소명내용이 불확실하고 연구수행 목표의 중간달성도 및 수행전략의 적정성이 부실하여 실패한 연구로 판단되어지는 과제

2) 의견평가 : 지정공모과제/자유응모과제 공통

소명내용에 대한 의견은 소명한 내용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여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종합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수행 또는 조기 완료,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성실중단, 50점 미만인 과제는 불성실 중단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수행이 필요한 과제는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보완 사항 등)의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조기완료, 중단 시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체크하고, 조기완료 및 중단에 대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질의응답 유의사항 및 사례

평가위원은 질의·응답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의 세부전공분야가 아니라서”라는 표현과 발표자를 비하하는 “잘 모르시나본데”라는 표현은 지양하고, 평가위원의 소속(직책)이 공개되지 않도록 “앞선 평가위원의 의견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발표자는 평가받는 입장이므로 긴장하거나 흥분할 수 있으므로, 언쟁을 피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로 질의를 하면서도 엄정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 ③ 발표자의 무성의하거나 공격적인 답변이나 행동에도 흥분하지 않도록 인내심 발휘를 부탁드립니다.
- ④ 발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자극

하지 않도록 배려, 훈계 또는 질타 차원의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배정된 평가시간과 타 평가위원의 질문기회를 고려하여 요지를 간략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평가위원의 질의내용이나 발표자의 답변에 대하여 편들거나 반박하는 의견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중요한 수정·보완사항은 질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연구진 입장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불만사례

- 과제를 떨어뜨리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경우
- 연구진 답변에 평가위원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평가위원이 질문을 독점하거나 주고 받기식의 질문이 계속되는 경우
- 연구진의 답변에 대하여 평가자들이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 평가위원 상호간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경우 또는 옆에 앉은 평가위원 간에 소곤소곤 대화하거나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
- 다음에 과제를 내더라도 이런 저런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는 발언
- 발표자의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경우
- 질문내용이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장황하고 훈계조인 경우
- 연구진의 답변 중에 평가위원이 답변 중단을 요구하거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꼬리는 무슨 질문이 계속되는 경우
- 질문사항이 평가의 본질에서 벗어난 경우
- 이 연구 끝나면 국내 농식품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냐?
- 사업 목적이 맞지 않다. 지난번에 평가받은 과제와 같은 것 아니냐?
- 외국에서 다된 것 아니냐? 현장에서 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 연구 과제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 데 연구비가 부족하냐?
-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왜 정부에 손 벌리느냐?
- 연구 다 해놓고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 솔직한 얘기인데 안 되는 것 잘 아시죠?

또한 농기평 사업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를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로 질의·응답 시 질문 없음으로 일관, 평가 중 개인 전화통화, 수시로 평가장의 입·퇴실 반복, 의견평가 항목을 “의견 없음”으로 작성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담당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는 질의 시 사업담당자의 진행을 무시하고 장시간 질문을 하거나 타 평가위원의 질의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IV. 최종평가하기

전체 개요

본 장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중 생명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최종평가 내용을 작성한 것입니다.

최종평가는 연구가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 최종연구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평가위원은 대상과제 평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직전평가(중간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최대 50%까지 포함합니다.

최종평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구두발표를 원칙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만, 대상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결과에 대한 포스터, 연구성과물의 전시 및 시연, 연구발표회 등을 통해 최종평가를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평가에서 불량 또는 매우불량으로 판정된 과제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1회에 한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최종평가(공개발표평가)

최종발표평가는 연구가 종료된 과제에 대해 주관연구책임자의 구두발표 및 질의응답과 성과물 전시 등을 통해 연구과제의 성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대면평가입니다.

가. 평가준비

최종평가는 대면평가로서 농기평에서 사전에 공지한 평가위원 모두가 함께 모여 평가에 임하게 되므로 평가시간 30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평가장 입실 시 평가위원 신분확인(신분증 등)후 사전 배정된 자리에 착석하시면 됩니다. 농기평 과제담당자는 해당과제 평가일정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10분간 실시하게 됩니다.

<참 고> 평가 시간

- 연구사업단 : 발표평가시간은 과제별 90분(구두발표 40분, 질의응답 40분, 평가서 작성 10분)
- 지정공모과제 : 발표평가시간은 과제별 80분(구두발표 30분, 질의응답 40분, 평가서 작성 10분)
- 자유응모과제 : 발표평가시간은 과제별 60분(구두발표 20분, 질의응답 30분, 평가서 작성 10분)

평가위원은 사전에 제공한 최종보고서(초안), 연구성과계획서,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선정 및 중간평가 시 보완사항, 공개발표 유인물 등을 숙지한 상태에서 최종평가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또한 평가위원은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술평가보다는 도출된 연구성과의 가치 또는 활용방안에 주안점을 두어 평가하여야 합니다.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성과계획서 등을 토대로 최종보고서 및 성과 내용의 합치성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개발표 유인물) 공개발표평가 시 제공하는 유인물은 사전에 준비된 관련서류(최종보고서, 연구성과계획서)와 병행하여 검토한 후 평가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참 고> 공개발표 유인물 구성요소

- 연구 목표 및 내용
 - 총괄, 세부 및 협동과제별 연구목표 및 내용 제시
- 연구수행 결과 및 당초 목표대비 달성도 제시
 - 세부, 협동과제별 연구수행결과 제시
 - 당초 목표대비 달성도 제시
- 연구성과 제시(정량적 및 정성적 성과 제시)
 - 연구성과목표의 달성도
- 연구성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제시

표 IV-1. 지정공모/자유응모과제 최종평가 평가서 항목 및 가중치

종합평가(가중치)	의견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 결과 목표의 달성도(4) · 연구수행 결과 연구성과의 충족도(10) · 연구수행의 성실성(2) · 정책연계성(2), 사업의 특성(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내용 이행 · 주요 연구성과 도출 · 본 과제 성과활용에 대한 건의 · 종합검토의견

평가준비가 완료된 후 주관연구책임자의 구두발표(PPT)에 의해서 최종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의 순서는 구두발표, 질의 응답, 평가서 작성으로 진행됩니다.

나. 평가시스템 접속하기

평가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농기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 고> 최종평가 방법

1. 농림수산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pet.re.kr) 접속
2. 메인화면의 “R&D 연구마당” 배너 클릭 후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3. 로그인 후 R&D 연구마당 상단의 “평가” 메뉴 클릭
4. 평가대상 사업명을 클릭하여 연구과제 평가 시스템으로 이동
 - * 평가시스템 최초 접속시 “서약서 작성”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서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작성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종보고서 클릭하여 평가대상 과제의 최종보고서(PDF파일) 내용 확인
 - * 과제명 클릭시 연구과제 평가점수/평가의견 입력 가능
 - * 평가를 완료하려면 평가점수 입력 화면 하단의 평가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되며, 평가완료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함

다. 평가서 작성

과제별 평가서는 인터넷 평가시스템에 접속 후 발표와 질의·답변이 끝난 과제에 대해서 평가서(종합평가, 의견평가)를 작성하면 됩니다. 평가서의 구성은 검토결과를 점수로 기재하는 종합평가와 평가의견을 기재할 수 있는 의견평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종합평가는 항목 및 세부평가지표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를 부여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인터넷 평가시스템에서 평가항목별로 0점~5점 이내로 평가점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점수가 계산됩니다. 의견평가는 종합평가를 통해 점수를 부여하고 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내용, 주요 연구성과, 과제 성과활용에 대한 의견 등을 서술하는 평가방법입니다. 평가의견은 각 항목별 1,000자 이내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평가점수(종합평가)에 관계없이 의견평가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 고> 의견평가서 구성(지정공모/자유응모 공통)

2. 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내용 이행
3. 주요 연구성과 도출
 - 가. 산업적 성과
 - 나. 과학기술적 성과
4. 본 과제 성과활용에 대한 건의
5. 종합검토의견

전체 평가항목의 내용입력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평가중간에 임시저장을 하여 추후(평가기간중) 수정 및 보완 할

수 있으며, 평가 완료 후 평가 최종확정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적으로 평가가 종료되며 이후 평가내용의 수정 및 보완이 불가능합니다.

라. 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종합평가(점수제 입력) :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기준

지정공모과제와 자유응모과제는 ‘연구수행 결과목표의 달성도’, ‘연구수행 결과 연구성과의 충족도’, ‘연구수행의 성실성’, ‘정책연계성’, ‘사업의 특성’의 5개 항목과 8개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세부평가내용별로 6점 척도(0~5점)로 평가를 실시하는 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IV-2. 평가점수 부여 시 기준

점수	기준내용
5점 부여	최종보고서 등의 연구결과(성과)가 각 항목별 세부평가지표와 매우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성공적으로 연구를 종료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부여	최종보고서 등의 연구결과(성과)가 각 항목별 세부평가지표와 전반적으로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3점 부여	최종보고서 등의 연구결과 및 성과가 각 항목별 세부평가지표와 일부 일치하지 않지만 목표한 연구결과 및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부여	최종보고서 등의 연구결과 및 성과가 각 항목별 세부평가지표와 일부만 충족되고 부분적인 성과만 도출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부여	최종보고서 등의 연구결과 및 성과가 각 항목별 세부평가지표와 일치하지 않고 연구결과 및 성과가 목표한 성과와 달리 도출되어 기대목표와 상이한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부여	최종보고서 등의 연구결과 및 성과가 세부평가지표와 전혀 일치하지 않고 연구수행에 있어서 불성실하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성과의 도출이 없어 실패한 과제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총점 부여 시 평가서의 평가항목, 세부내용, 가중치를 확인한 후 평가를 실시하되 변별력 있는 평가를 위해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정이 필요한 과제로 판단될 경우 60점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표 IV-3. 평가점수 총점 부여 시 기준

점 수	내 용
90점 이상	연구결과의 우수성, 연구성과의 달성도,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실용화, 파급효과)가 매우 높아 성공과제라고 판단되는 과제
80점~90점	연구수행 목표의 달성도 및 연구결과가 우수하여 해당기술을 농식품 산업현장에 적용할 경우 생산성 향상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70~80점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연구결과 및 성과 달성도가 다소 미흡하여 보완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라고 판단되는 과제
60~70점	연구결과 및 성과의 달성도가 미흡하여 일부 실패한 부분이 인정되지만 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내용 이행여부와 일치하고 연구수행 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60점 미만	연구결과 및 성과의 달성도가 매우 미흡하고 목표한 연구성과의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실패과제로 판단되는 과제

2) 평가의견 : 지정공모과제/자유응모과제 공통

평가위원은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적하고자 하는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산업적 성과) 평가위원은 현재까지 연구결과로 실용화·산업화 성과가 있는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적 성과) 평가위원은 당장 실용화 연계성은 낮지만 기술의 잠재성이 크고 유망 실용화 기술로 발전할 핵심기술이

있을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위원은 연구기관, 연구자, 참여기업이 실용화·산업화 등 연구성과 활용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수행 결과의 종합평가(점수제)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평가서 작성상의 참고 사항

- 매우우수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최종평가서」 “1. 종합평가”의 점수가 90점 이상인 과제
- 우수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최종평가서」 “1. 종합평가”의 점수가 80점 이상~90점 미만인 과제
- 보통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최종평가서」 “1. 종합평가”의 점수가 60점 이상~80점 미만인 과제
- 불량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달성이 미진하고, 「최종평가서」 “1. 종합평가”의 점수가 50점 이상~60점 미만인 과제
- 매우불량 : 당초의 연구 및 성과목표달성이 미진하고, 「최종평가서」 “1. 종합평가”의 점수가 50점 미만인 과제

특히 평가위원은 불량 및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통 이상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 최종보고서의 수정·보완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질의응답 유의사항 및 사례

평가위원은 질의·응답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의 세부전공분야가 아니라서”라는 표현과 발표자를 비하하는 “잘 모르시나본데”라는 표현은 지양하고, 평가위원의 소속(직책)이 공개되지 않도록 “앞선 평가위원의 의견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발표자는 평가받는 입장이므로 긴장하거나 흥분할 수 있으므로, 언쟁을 피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로 질의를 하면서도 엄정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③ 발표자의 무성의하거나 공격적인 답변이나 행동에도 흥분하지 않도록 인내심 발휘를 부탁드립니다.

④ 발표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도록 배려, 훈계 또는 질타 차원의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배정된 평가시간과 타 평가위원의 질문기회를 고려하여 요지를 간략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평가위원의 질의내용이나 발표자의 답변에 대하여 편들거나 반박하는 의견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중요한 수정·보완사항은 질문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연구진 입장에서 평가위원에 대한 불만사례

- 과제를 떨어뜨리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경우
- 연구진 답변에 평가위원이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
- 평가위원이 질문을 독점하거나 주고 받기식의 질문이 계속되는 경우
- 연구진의 답변에 대하여 평가자들이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

- 평가위원 상호간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경우 또는 옆에 앉은 평가위원 간에 소곤소곤 대화하거나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
- 다음에 과제를 내더라도 이런 저런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는 발언
- 발표자의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경우
- 질문내용이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장황하고 혼계조인 경우
- 연구진의 답변 중에 평가위원이 답변 종단을 요구하거나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꼬리는 무슨 질문이 계속되는 경우
- 질문사항이 평가의 본질에서 벗어난 경우
- 이 연구 끝나면 국내 농식품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나?
- 사업 목적이 맞지 않다. 지난번에 평가받은 과제와 같은 것 아니냐?
- 외국에서 다된 것 아니냐? 현장에서 다하고 있는 것 아니냐?
- 연구 과제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 데 연구비가 부족하냐?
-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왜 정부에 손 벌리느냐?
- 연구 다 해놓고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 솔직한 얘기인데 안 되는 것 잘 아시죠?

또한 농기평 사업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를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로 질의·응답 시 질문 없음으로 일관, 평가 중 개인 전화통화, 수시로 평가장의 입·퇴실 반복, 의견평가 항목을 “의견 없음”으로 작성 등이 해당됩니다.

사업담당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는 질의 시 사업담당자의 진행을 무시하고 장시간 질문을 하거나 타 평가위원의 질의에 끼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V. 참고자료[작성 예시]

참고자료 1. 지정공모과제(서면평가) 선정평가 작성예시

▷ (예시사례) 지정공모과제(RFP) 주요내용

▶ 과제명 :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기간 3년 이내, 연구비 3억 이내)

- (필요성) 농가에서는 일정기간 사육 후 난계대 질병이 확인될 경우 도태·폐기하므로 국내 양계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비용 손실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화장·종계장과 농장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개발목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건강한 닭 사육을 통한 축산농가 보호 및 식중독 원인균의 오염요인을 사전에 제어함으로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 마련 및 산업화
- (연구범위 및 내용)
 -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구축(난계대 질병 국내 실태 조사, 병아리 생산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 모형화 및 식별체계 개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개발)
 - 난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종계장 및 실용계농장 사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
- (과제구성요건)
 - 산업체 참여 필수/ 3P 분석을 통한 기 수행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화 전략 제시 필수

□ 종합평가(점수제)

▶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구분	1) 연구목표와의 합치성 및 연구범위와의 명확성
5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 및 연구범위가 일치하는 경우
4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는 일치하나 연구범위가 일부 축소되었거나 통합하여 제시한 경우(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과 정보시스템 구축시 병아리 생산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식별체계와 생산추적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
3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는 일치하나 연구범위 중 일부 개발내용이 누락된 경우(RFP의 내용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단계대 질병 국내 실태조사 제외하고 기존 문헌자료 인용)
2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가 축소되어 있고 연구범위가 “단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한정되어 있어 RFP에서 제시한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연구범위가 RFP 제시 내용과 상이한 경우
0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와 전혀 다른 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범위도 RFP 제시 내용과 상이한 경우

구분	2) 연구내용의 충실성·체계성·창의성
5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내용이 체계적이고 창의적이며 RFP 제시내용을 매우 충족하는 경우
4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연구내용의 창의성, 과제구성의 체계 및 RFP의 제시내용이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경우
3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연구내용이 RFP 제시내용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나 과제구성 체계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지만 연구계획서의 일부를 수정을 해야만 연구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연구내용이 RFP 제시내용 중 일부(단계대 질병관리시스템만 구축)만 제시하고 있어 과제구성 체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1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RFP 제시내용이 없거나 과제구성 체계가 연구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0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과 전혀 상이한 연구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해당과제가 선정될 경우 연구개발이 실패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술개발 수행능력

구분	3) 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충실도(선행연구결과 확보, 관련 특허, 논문 및 시장분석정도)
5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가 매우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달성을 위한 연구추진계획과의 연관성이 밀접한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와 연구추진계획과의 연관성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 중 일부(예 : 특허분석) 항목의 사전조사내용이 연구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사전조사 내용은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 중 한 가지 분야만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 있어 선행연구조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의 선행연구조사 내용이 RFP의 제시내용의 일부만 해당되어 보고서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를 공란으로 작성하거나 전혀 다른 선행연구조사를 기술한 경우

구분	4) 연구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5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기반 시설, 장비 등의 확보가 충분하여 성공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기반 시설, 장비 등의 확보가 전반적으로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기반 시설, 장비의 확보가 일부 부족하나 임대·구입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2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기반 시설, 장비의 확보가 부족하여 임대·구입을 하더라도 연구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연구기반 시설, 장비는 일부 확보되어 있으나 핵심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실질적인 연구수행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기반 시설, 장비의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과제 선정 후 연구비로 전체 시설·장비를 구입해서 활용 예정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5)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5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 실적이 해당 연구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일치하는 경우(예 : 축산(양계)전문가, 수의학 전문가, IT전문가 포함)
4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 실적이 해당 연구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3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실적이 일부 일치하지 않지만(예 : 주요 연구 실적이 양돈 질병관리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양계 질병관리 분야 실적이 미미) 동종분야(축산)이기 때문에 과제수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능력이 적정하나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 실적이 상이(예 : 식물전공자 참여, IT 전문가 미참여, 동물질병연구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 실적이 상이하거나(예 : 식물전공자 참여, IT 전문가 미참여, 동물질병연구 미미) 미비하여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전공이 및 주요 연구실적과 일치하지 않아 해당 연구과제의 목표를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술개발 추진전략

구분	6) 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단계별 추진전략의 명확성, 적정성, 합리성)
5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론이 적정하고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이 매우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된 경우
4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론, 연차별, 세부 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론 및 추진 전략이 일부 다르지만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목표한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 수행을 위한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 및 추진전략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구방법론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목표한 결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 수행을 위한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 및 추진전략에 대한 설계가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론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단계별 추진전략의 명확성, 연구방법론의 적정성,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 등이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구분	7) 연구팀간의 연계성, 추진전략의 합리성
5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양계질병관리 세부과제(연구팀)와 IT분야 세부과제(연구팀)과 연계성이 우수하고 세부연구기관간 업무분담 및 추진전략이 매우 합리적인 경우
4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양계질병관리 세부과제(연구팀)와 IT분야 세부과제(연구팀)과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세부연구기관간 업무분담 및 추진전략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양계질병관리 세부과제(연구팀)와 IT분야 세부과제(연구팀)과 연계성은 우수하나 세부연구기관간 업무분담 및 추진전략이 일부 미흡하나, 단 연구계획을 보완할 경우 연구수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양계질병관리 세부과제(연구팀)와 IT분야 세부과제(연구팀)와 연계성이 미흡하여 세부연구기관간 업무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양계질병관리 세부과제(연구팀)와 IT분야 세부과제(연구팀)로 구분하여 추진하지 않고 단일과제로 양계질병 분야 연구진으로만 연구를 수행하게 되어 “난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연구가 비전문 연구팀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0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연구팀)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거나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지 않아 연구를 수행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과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구분	8) 기술개발 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5점	RFP에서 제시한 연구제안서 내용을 모두 충족하면서 연구기간(3년 이내) 및 연구비(3억 이내)가 최소·최단기간으로 제안한 경우
4점	RFP에서 제시한 연구제안서 내용, 연구기간(3년 이내), 연구비(3억 이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3점	연구기간(3년 이내), 연구비(3억 이내)를 모두 충족하지만 RFP에 제시한 내용을 일부 반영하지 못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연구내용을 일부 변경하면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점	연구기간(3년 이내), 연구비(3억 이내)를 충족하지만 RFP에서 제시한 내용 중 일부만 반영되어 연구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기간(3년 이내), 연구비(3억 이내)를 충족하지만 RFP에서 제시한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기간(3년 이내), 연구비(3억 이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연구기간 3년 이상, 연구비 3억 이상)

▶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구분	9)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적절성)
5점	연구개발목표 대비 연구성과(특허, 논문, 기술이전(시제품 생산) 등) 목표가 양적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로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예 : 3년 연구기간동안 특허출원/등록(각 3건), SCI 논문 3편, 시제품 생산 및 기술이전 3건)
4점	연구개발목표 대비 연구성과(특허, 논문, 기술이전(시제품 생산) 등) 도출목표가 양적·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예 : 특허 출원·등록 각 1건/연구비 1억 원당, 논문 3편(SCI 논문 1편 필수/1억 원당, 기술이전(시제품생산) 1건 이상)
3점	연구개발목표 대비 연구성과(특허, 논문, 기술이전(시제품 생산)) 도출목표가 양적으로는 타당하나 질적으로 다소 부족하며 일부 성과항목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예 : 특허 출원 1건/연구비 1억 원당, 논문 5편(SCI논문 제외))
2점	연구개발목표 대비 연구성과(특허, 논문, 기술이전(시제품 생산)) 도출목표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예 : 총 연구비 대비 특허출원 1건, 논문 1건)
1점	연구개발목표 대비 연구성과(특허, 논문, 기술이전(시제품 생산)) 도출목표가 양적·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예 : 총 연구비 대비 논문 1건)
0점	연구개발목표 대비 연구성과(특허, 논문, 기술이전(시제품 생산))에 대한 목표 제시가 없고 연구성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10)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기술의 혁신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5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을 통한 실용화·산업화 가능성이 높고 국가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예 : 전국 양계농가의 질병관리 시스템 보급 및 확산으로 양계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손실 최소화)
4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실용화·산업화(기술이전 및 시제품 개발) 가능성이 높고 산업적으로 파급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예 : 기업형 양계농가의 질병·사양관리 시스템 선진화 및 산업규모 확대 기대)
3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실용화·산업화(기술이전 및 시제품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예 : 시스템 판매를 통한 참여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
2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해당기술의 실용화를 통한 양계현장으로의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실용화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비용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해당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성과 도출이 힘들뿐만 아니라 실용화·산업화 및 산업적 파급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업의 특성

구분	11)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5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을 매우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중 일부 충족하지 못하지만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중 일부만 충족함에 따라 연구 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1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0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실패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 공고된 과제제안 요구서(RFP)와의 부합성

▷ 종합평가(점수제)의 1)연구목표와의 합치성 및 연구범위와의 명확성, 6)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 8)기술개발 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10)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을 평가한 후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해당 평가에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① 선정의견으로 평가하는 경우(60점 이상 기준)
 - 해당과제는 연구과제제안서(RFP)에서 제시하고 있는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론이 적정하여 연구목표를 달성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특히 난계대 질병 국내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 리서치기간(예: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양계농가의 As-is를 발굴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은 근거자료의 객관성 확보와

추진전략을 명확화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됨.

- 기술개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기술개발 방법을 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동시에 추진하여 RFP에 제시된 연구기간(3년)보다 단축된 2년 이내로 기술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인 산업체 참여를 필수로 하였는데 해당과제에서는 국내 최대 양계생산 업체인 (주)하림이 세부과제로 참여하여 기술의 신속한 현장적용 및 보급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작성예시② 선정제의 의견으로 평가하는 경우(60점 미만 기준)

- 해당과제는 연구과제제안서(RFP)에서 제시하고 있는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질병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계장 및 실용계 농장 사육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이 제외되어 연구개발이 완료되더라도 효과적으로 양계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병아리 생산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 모형화 및 식별체계 개발”의 경우 해외(예 : 미국)의 식별체계를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외국과 병아리 생산 구조가 차이점이 있는바 독자적인 식별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RFP에서 제안한 기획의도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기술개발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세부과제로 구성하여

동시에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는데 단일 연구팀에서 단계별(연차별)로 과제를 추진함에 따라 연구 목표 기간 내에 효과적인 연구결과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사업담당관리 정한 기준인 3P 분석을 통한 기 수행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화 전략을 필수사항으로 제시하였는데 3P 분석 및 기수행과제와의 차별화 보고서가 제시되지 않았음

□ 연구팀 선정 필요시 수정·보완해야 할 내용은?

▷ 종합평가(점수제)의 세부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수정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선정의견으로 평가된 과제라 할지라도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연구방법론이 개선되어 효과적인 결과도출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의견 작성이 필요합니다.

* 해당 평가에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

- **(추진전략)** 해당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안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의 2개 핵심과제(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난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의 세부 기술인 병아리 생산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 모형화 및 식별체계 개발과, 병아리 생산 추적 정보시스템 개발이 1차년도 연구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차년도에는 식별체계 개발

연구(양계 질병 연구팀)에서 수행하고 해당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 정보시스템 구축(IT 연구팀)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 수행방법으로 판단됨.

- **(연구팀의 구성)**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팀 구성은 전반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1세부과제인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연구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참여연구원 중 양계질병관련 연구 실적이 미미(단, 양돈질병분야 실적은 일부 있음)함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보완하여 참여연구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실용화 · 산업화)** 해당 연구과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SCI 3편 이상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기술의 혁신성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당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을 위한 실용화 · 산업화 전략 및 목표가 미비함. 따라서 해당기술의 실용화 방안과 성과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여기업 변경)** 해당과제에 참여하기로 한 (주)한솔축산은 사업 주력종목이 돼지고기 생산 및 가공업체로서 병아리 질병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참여기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됨. 다만 신규로 병아리 질병분야 진출을 목표로 과제에 참여한 경우라고 한다면 연구계획서 내에 (주)한솔축산의 신규사업계획서를 추가한 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제외 시 이유는?

▷ 종합평가(점수제)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선정 과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선정과제에서 제외된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평가(점수제)의 항목별로 3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의견을 서술해 주십시오.

*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

- **(연구목표와의 합치성 및 연구범위와의 명확성)**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연구범위가 RFP 제시내용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 (난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의 세부추진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연구내용의 충실성 · 체계성 · 창의성)** 해당 연구계획서에는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RFP 제시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과제의 특성상 양계질병 연구팀과 IT분야 연구팀의 협업체제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과제 구성체계가 주관연구기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충실도)**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의 선행연구가 RFP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의 일부내용만 반영하여 해당기술에 대한 사전조사 보고서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연구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해당연구에 필요한 연구·실험장비 및 시설 보유현황이 불명확하고 연구비 소요현황을 검토해 보면 과제 선정 후 구입·임대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어 과제선정 시 연구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사·중복성에 대한 의견

▷ 농기평에서 연구계획서와 함께 서면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한 “유사·중복과제”의견서를 검토하여 연구방법론 및 기술의 유사도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과제명이 중복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부기술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중복일 경우 선정제외 의견을 작성해 주시고 중복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선정 시 중복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연구과제명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① 유사·중복성이 없는 과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유사·중복과제”의견서와 해당 연구계획서의 연구내용 및 범위를 비교·검토한 결과 연구내용이 창의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작성예시② 유사·중복성이 없지만 “연구과제명”이 유사하여 중복논란이 있을 경우
 - 연구계획서의 과제명이 “한국형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구축”으로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현재 2년차

연구로 수행중인 “닭 질병(전염성 빈혈 등) 예방을 위한 연구”와 유사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연구 내용 검토결과 농진청 연구는 백신개발에 한정되어 있고 해당연구계획서는 예방 및 질병관리 시스템(전산체계 포함)을 개발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연구과제명을 “한국형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로 구체성을 가진 연구과제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작성예시③ 유사·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계획서 내용 중 난계대 질병관리 프로그램 개발(양계 농장 사육관리 정보시스템)은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소에서 2009년 용역연구로 추진한 “양계 농가 질병관리 대응 매뉴얼 및 시스템 개발”과제에서 이미 연구를 완료하여 양계농가에 보급중인 사항이므로 중복성이 높은 과제임. 따라서 해당 연구내용을 조정하거나 선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절성

▷ 종합평가(점수제)의 8) 기술개발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한 후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① 연구비 또는 연구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RFP에 제시한 내용 이상으로 연구를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간 3년, 연구비 2억 8천만 원(RFP : 3억 원 이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 작성예시② 연구비 또는 연구기간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연구내용은 RFP를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나 연구계획서상 연구비를 3억 5천만으로 과도하게 계상한바 연구비 총액을 3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직접비의 비목중 해외여비와 인건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함

참고자료 2. 지정공모과제(공개발표평가) 선정평가 작성예시

▷ (예시사례) 지정공모과제(RFP) 주요내용

- ▶ 과제명 :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기간 3년 이내, 연구비 3억 이내)
 - (필요성) 농가에서는 일정기간 사육 후 난계대 질병이 확인될 경우 도태·폐기하므로 국내 양계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비용 손실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화장·종계장과 농장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개발목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건강한 닭 사육을 통한 축산농가 보호 및 식중독 원인균의 오염요인을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 마련 및 산업화
 - (연구범위 및 내용)
 -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구축(난계대 질병 국내 실태 조사, 병아리 생산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 모형화 및 식별체계 개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개발)
 - 난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종계장 및 실용계농장 사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
 - (과제구성요건)
 - 산업체 참여 필수/ 3P 분석을 통한 기 수행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화 전략 제시 필수

□ 종합평가(점수제)

▶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구분	1) 연구목표와의 합치성 및 연구범위와의 명확성
5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 및 연구범위가 일치하는 경우
4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는 일치하나 연구범위가 일부 축소되었거나 통합하여 제시한 경우(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과 정보시스템 구축시 병아리 생산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식별체계와 생산추적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
3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는 일치하나 연구범위 중 일부개발내용이 누락된 경우(RFP의 내용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단계대 질병 국내 실태조사 제외하고 기존 문헌자료 인용)
2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가 축소되어 있고 연구범위가 “단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한정되어 있어 RFP에서 제시한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연구범위가 RFP 제시 내용과 상이한 경우
0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와 전혀 다른 목표를 제시하고 연구범위도 RFP 제시 내용과 상이한 경우

구분	2) 연구내용의 충실성·체계성·창의성
5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내용이 체계적이고 창의적이며 RFP 제시내용을 매우 충족하는 경우
4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연구내용의 창의성, 과제구성의 체계 및 RFP의 제시내용이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경우
3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연구내용이 RFP 제시내용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나 과제구성 체계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지만 연구계획서의 일부를 수정을 해야만 연구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연구내용이 RFP 제시내용 중 일부(단계대 질병관리시스템만 구축)만 제시하고 있어 과제구성 체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1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RFP 제시내용이 없거나 과제구성 체계의 연구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0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과 전혀 상이한 연구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해당과제가 선정될 경우 연구개발이 실패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술개발 수행능력

구분	3) 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충실도(선행연구결과 확보, 관련 특허, 논문 및 시장분석정도)
5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가 매우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달성을 위한 연구추진계획과의 연관성이 밀접한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와 연구추진계획과의 연관성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 중 일부(예 : 특허분석) 항목의 사전조사내용이 연구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사전조사 내용이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 중 한 가지 분야만 사전조사가 이루어져 있어 선행연구조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의 선행연구조사 내용이 RFP의 제시내용의 일부만 해당되어 보고서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를 공란으로 작성하거나 전혀 다른 선행연구조사를 기술한 경우

구분	4) 연구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5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기반 시설, 장비 등의 확보가 충분하여 성공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기반 시설, 장비 등의 확보가 전반적으로 충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기반 시설, 장비의 확보가 일부 부족하나 임대·구입을 통해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2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기반 시설, 장비의 확보가 부족하여 임대·구입을 하더라도 연구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연구기반 시설, 장비는 일부 확보되어 있으나 핵심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여 실질적인 연구수행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기반 시설, 장비의 확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과제 선정 후 연구비로 전체 시설·장비를 구입해서 활용 예정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5)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5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실적이 해당 연구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일치하는 경우(예 : 축산(양계)전문가, 수의학 전문가, IT전문가 포함)
4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 실적이 해당 연구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3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실적이 일부 일치하지 않지만(예 : 주요 연구실적이 양돈 질병관리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양계 질병관리 분야 실적이 미미) 동종분야(축산)이기 때문에 과제수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능력이 적정하나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실적이 상이(예 : 식물전공자 참여, IT 전문가 미참여, 동물질병연구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 실적 중 상이하거나(예 : 식물전공자 참여, IT 전문가 미참여, 동물질병 연구 미미) 미비하여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전공이 및 주요연구실적과 일치하지 않아 해당 연구과제의 목표를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술개발 추진전략

구분	6) 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단계별 추진전략의 명확성, 적정성, 합리성)
5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론이 적정하고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이 매우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된 경우
4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론, 연차별, 세부 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론 및 추진전략이 일부 다르지만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목표한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 수행을 위한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 및 추진전략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구방법론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목표한 결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 수행을 위한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 및 추진전략에 대한 설계한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론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단계별 추진전략의 명확성, 연구방법론의 적정성,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 등이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구분	7) 연구팀간의 연계성, 추진전략의 합리성
5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양계질병관리 세부과제(연구팀)와 IT분야 세부과제(연구팀)와 연계성이 우수하고 세부연구기관간 업무분담 및 추진전략이 매우 합리적인 경우
4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양계질병관리 세부과제(연구팀)와 IT분야 세부과제(연구팀)와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세부 연구기관 업무분담 및 추진전략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양계질병관리 세부과제(연구팀)와 IT분야 세부과제(연구팀)와 연계성은 우수하나 세부연구기관간 업무 분담 및 추진전략이 일부 미흡하나 연구계획을 보완할 경우 연구수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양계질병관리 세부과제(연구팀)와 IT분야 세부과제(연구팀)와 연계성이 미흡하여 세부연구기관간 업무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양계질병관리 세부과제(연구팀)와 IT분야 세부과제(연구팀)로 구분하여 추진하지 않고 단일과제로 양계질병 분야 연구진으로만 연구를 수행하게 되어 “난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연구가 비전문 연구팀에서 수행하게 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0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연구팀)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거나 체계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지 않아 연구를 수행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과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구분	8) 기술개발 기간 및 연구비의 적정성
5점	RFP에서 제시한 연구제안서 내용을 모두 충족하면서 연구기간(3년 이내) 및 연구비(3억 이내)가 최소·최단기간으로 제안한 경우
4점	RFP에서 제시한 연구제안서 내용, 연구기간(3년 이내), 연구비(3억 이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3점	연구기간(3년 이내), 연구비(3억 이내)를 모두 충족하지만 RFP에 제시한 연구제안서 내용을 일부 반영하지 못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때 연구 내용을 일부 변경하면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점	연구기간(3년 이내), 연구비(3억 이내)를 충족하지만 RFP에서 제시한 연구 제안서 내용 중 일부만 반영되어 연구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기간(3년 이내), 연구비(3억 이내)를 충족하지만 RFP에서 제시한 연구 제안서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여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기간(3년 이내), 연구비(3억 이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연구기간 3년 이상, 연구비 3억 이상)

▶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구분	9)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적절성)
5점	연구개발목표 대비 연구성과(특허, 논문, 기술이전(시제품 생산) 등) 목표가 양적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로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예 : 3년 연구기간동안 특허출원/등록(각 3건), SCI 논문 3편, 시제품 생산 및 기술이전 3건)
4점	연구개발목표 대비 연구성과(특허, 논문, 기술이전(시제품 생산) 등) 도출목표가 양적·질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예 : 특허 출원·등록 각 1건/연구비 1억원당, 논문 3편(SCI 논문 1편 필수/1억원당, 기술이전(시제품생산) 1건 이상)
3점	연구개발목표 대비 연구성과(특허, 논문, 기술이전(시제품 생산)) 도출목표가 양적으로는 타당하나 질적으로 다소 부족하며 일부 성과항목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예 : 특허 출원 1건/연구비 1억 원당, 논문 5편(SCI논문 제외))
2점	연구개발목표 대비 연구성과(특허, 논문, 기술이전(시제품 생산)) 도출목표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예 : 총 연구비 대비 특허출원 1건, 논문 1건)
1점	연구개발목표 대비 연구성과(특허, 논문, 기술이전(시제품 생산)) 도출목표가 양적·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예 : 총 연구비 대비 논문 1건)
0점	연구개발목표 대비 연구성과(특허, 논문, 기술이전(시제품 생산))에 대한 목표 제시가 없고 연구성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10)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기술의 혁신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5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을 통한 실용화·산업화 가능성이 높고 국가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예 : 전국 양계농가의 질병관리 시스템 보급 및 확산으로 양계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손실 최소화)
4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실용화·산업화(기술이전 및 시제품 개발) 가능성이 높고 산업적으로 파급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예 : 기업형 양계농가의 질병·사양관리 시스템 선진화 및 산업규모 확대 기대)
3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실용화·산업화(기술이전 및 시제품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예 : 시스템 판매를 통한 참여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
2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해당기술의 실용화를 통한 양계 현장으로의 기술 및 장비에 대한 실용화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비용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해당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성과 도출이 힘들뿐만 아니라 실용화·산업화 및 산업적 파급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업의 특성

구분	11) 사업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5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을 매우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중 일부 충족하지 못하지만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중 일부만 충족함에 따라 연구 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1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0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실패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 조정의견(연구내용, 연구팀)

<p>▷ 종합평가(점수제)의 세부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의견으로 판단한 경우 조정(연구내용, 연구팀)해야 할 내용과 선정 제외로 판단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의견으로 평가된 과제라 할지라도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연구방법론이 개선되어 효과적인 결과도출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보완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제외 의견일 경우 탈락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p>*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p>

○ 작성예시① 선정의견일 경우

- **(추진전략)** 해당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안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의 2개 핵심과제(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난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의 세부 기술인 병아리 생산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 모형화 및 식별체계 개발과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이 1차년도 연구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차년도에는 식별체계 개발연구(양계 질병 연구팀)에서 수행하고 해당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 정보시스템 구축(IT 연구팀)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 수행방법으로 판단됨.

- **(연구팀의 구성)**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팀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1세부과제인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연구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참여연구원 중 양계질병관련 연구실적이 미미(단, 양돈질병분야 실적은 일부 있음)함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보완하여 참여연구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실용화·산업화)** 해당 연구과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SCI 3편 이상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기술의 혁신성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당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을 위한 실용화·산업화 전략 및 목표가 미비함. 따라서 해당기술의 실용화 방안과 성과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여기업 변경)** 해당과제에 참여하기로 한 (주)한솔축산은 사업 주력종목이 돼지고기 생산 및 가공업체로서 병아리 질병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참여기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됨. 다만 신규로 병아리 질병분야 진출을 목표로 과제에 참여한 경우라고 한다면 연구계획서 내에 (주)한솔축산의 신규사업계획서를 추가한 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작성예시② 선정제외 의견일 경우

- **(연구목표와의 합치성 및 연구범위와의 명확성)**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연구범위가 RFP 제시내용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 (난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의 세부추진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연구내용의 충실성·체계성·창의성)** 해당 연구계획서에는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RFP 제시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과제의 특성상 양계질병 연구팀과 IT분야 연구팀의 협업체제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과제구성체계가 주관연구기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연구목표를 달성하는 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충실도)**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의 선행연구가 RFP에서 제시한 연구내용의 일부내용만 반영하여 해당기술에 대한 사전조사 보고서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
- **(연구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해당연구에 필요한 연구·실험장비 및 시설 보유현황이 불명확하고 연구비 소요현황을 검토해 보면 과제 선정 후 구입·임대계획만을 제시하고 있어 과제선정 시 연구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사·중복 조정의견

▷ 농기평에서 연구계획서와 함께 서면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한 “유사·중복과제”의견서를 검토하여 연구방법론 및 기술의 유사도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과제명이 중복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부기술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중복일 경우 선정제외 의견을 작성해 주시고 중복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선정 시 중복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연구과제명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① 유사·중복성이 없는 과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유사·중복과제”의견서와 해당 연구계획서의 연구내용 및 범위를 비교·검토한 결과 연구내용이 창의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작성예시② 유사·중복성이 없지만 “연구과제명”이 유사하여 중복논란이 있을 경우
 - 연구계획서의 과제명이 “한국형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구축”으로서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현재 2년차 연구로 수행중인 “닭 질병(전염성 빈혈 등) 예방을 위한 연구”와 유사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연구내용 검토결과 농진청 연구는 백신개발에 한정되어 있고 해당연구계획서는 예방 및 질병관리 시스템(전산체계 포함)을 개발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연구과제명을 “한국형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로 구체성을 가진 연구과제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작성예시③ 유사·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계획서 내용 중 난계대 질병관리 프로그램 개발(양계 농장 사육관리 정보시스템)은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소에서 2009년 용역연구로 추진한 “양계 농가 질병관리 대응 매뉴얼 및 시스템 개발”과제에서 이미 연구를 완료하여 양계농가에 보급중인 사항이므로 중복성이 높은 과제임. 따라서 해당 연구내용을 조정하거나 선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사정

▷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총 정부지원 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 연구비, 총 연구기간을 검토하여 적정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사정(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구분	총 정부지원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
신청내용	300,000천원	100,000천원	3년
사정내용	240,000천원	80,000천원	3년

참고자료 3. 지정공모과제(정책부합성평가) 선정평가 작성예시

▷ (예시사례) 지정공모과제(RFP) 주요내용

- ▶ 과제명 :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기간 3년 이내, 연구비 3억 이내)
- (필요성) 농가에서는 일정기간 사육 후 난계대 질병이 확인될 경우 도태·폐기하므로 국내 양계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비용 손실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화장·종계장과 농장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개발목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견강한 닭 사육을 통한 축산농가 보호 및 식중독 원인균의 오염요인을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 마련 및 산업화
- (연구범위 및 내용)
 -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구축(난계대 질병 국내 실태 조사, 병아리 생산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 모형화 및 식별체계 개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개발)
 - 난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종계장 및 실용계농장 사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
- (과제구성요건)
 - 산업체 참여 필수/ 3P 분석을 통한 기 수행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화 전략 제시 필수

구분	1) 지정된 사업내용의 충실성
5점	RFP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범위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성된 경우
4점	RFP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범위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3점	RFP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범위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중 일부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나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경우 연구목표 달성에 무리가 없는 경우
2점	RFP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범위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중 상당(50% 이상)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더라도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RFP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범위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중 일부분(30% 이하)만 반영되어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RFP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범위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과 전혀 일치하지 않아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2) 농어업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5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RFP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부합하고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 등이 정책목표 달성에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4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RFP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이 정책목표 달성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RFP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일부 차이점이 있으나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을 수정·보완할 경우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RFP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상당(50% 이상)부분 차이점이 있으며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더라도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RFP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일부분(30% 이하)만 반영되어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RFP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3)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서
5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고 연구팀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고 연구팀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팀의 구성 및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나 연구팀 및 참여연구원의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성공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팀 구성이 미흡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수행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연구진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연구진에 해당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구개발에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평가의견

<p>▷ 종합평가(점수제)의 세부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의견으로 판단한 경우 조정해야 할 내용, 선정 제외로 판단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의견으로 평가된 과제라 할지라도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정책과의 부합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보완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제외 의견일 경우 정책부합적인 측면에서 탈락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p>*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p>
--

○ 작성예시① 선정의견일 경우

- **(사업내용)** 해당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안한 “난계대 질병 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은 RFP에서 제시한 세부 내용(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 등)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 양계생산농가에서 사전에 질병발생을 사전에 제어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손실을 방지하게 되어 경영 안정 및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예시)인 “가축질병 저감화를 위한 생산시설 개선사업”의 기반사업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사료되며 향후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가축질병 저감화를 위한 생산시설 개선사업”의 핵심 지원분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과제를 제안한 (제1세부과제) 한국대학교 동물자원학과(김영수 교수팀)와 (제2세부과제) KAIST 정보통신학과(이영진 교수팀)는 해당분야(양계질병, 축산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실적이 풍부하여 해당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KAIST 이영진 교수팀의 경우 2009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연구를 통해 추진한 “가금류 질병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예시) 연구를 수행하여 오리생산농가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는 등 연구진의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작성예시② 선정 제외의견일 경우
 - **(사업내용)** 해당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안한 “난계대 질병 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은 RFP에서 제시한 세부 내용(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제1세부과제 연구내용에서 “난계대 질병 국내실태 조사”, “병아리 식별체계 개발”은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제2세부과제의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언어를 제시하고 있지 못함
 -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예시)인 “가축질병 저감화를 위한 생산시설 개선사업”의 핵심 지원분야가 “종계 및 실용계 질병제어 체계” 구축인데 해당과제는 “산란계 질병제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합치성이 낮음. “산란계”에 대한 질병제어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으로 본 과제의 사업목적 및 현장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과제를 제안한 (제1세부)정보대학교 IT학과(박영철 교수팀)는 프로그램 개발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제2세부)관양대학교 생명자원학과(송미경 교수팀)는 축산질병분야의 실적이 미미 할 뿐만 아니라 양계질병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여 당초 목표한 연구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4. 자유응모과제(서면평가) 선정평가 작성예시

▷ (예시사례) 자유응모과제 연구계획서 내용

▶ 과제명 : 오가피 발효물을 이용하여 간 기능 개선효능을 갖는 식품 및 식품소재개발(연구기간 3년, 정부출연금 4억, 기업부담금 1억 4천)

▶ 주관연구기관 : (주)오가피, 협동연구기관 : 관양대학교

• (연구목표)

① 오가피-발효기술을 통해 얻은 발효물 소재의 표준화 확립, 체계적인 효능평가, 안전성확보 및 인체실험 등을 통한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

② 오가피-발효물의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소재 개발은 오가피 관련 농림산업의 발전과 관련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우수소재개발을 통한 수출 증대에 기여할 제품개발 및 산업화를 목표로 함.

• (연구내용)

① 오가피-발효물소재의 최적배양조건(액체 및 고체) 확립 및 대량 생산 조건 확립

② 오가피-발효물소재의 표준화 작업 확립 오가피-발효물의 유효성분 분석 및 지표물질 선정

③ 오가피-발효물소재의 간 기능 개선에 대한 효능 확인 : in vitro/ in vivo test

④ 오가피-발효물소재의 안전성 및 안정성확보

⑤ 오가피-발효물소재의 인체실험을 통한 효능 검토

⑥ 오가피-발효물소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간 기능 개선 분야의 개별인정 신청

⑦ 오가피-발효물소재를 활용한 유통별 다양한 제형 및 제품개발 산업화

• (기대효과)

① 기술적인 측면의 기대성과

- 발효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갖는 소재 개발로 1차 및 2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연구원의 소재 및 제품개발방법과 효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 방법 습득을 기술축적
- 오가피-발효물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는, 관련기술을 체계화 및 파급효과에 기여

②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에 따른 수익 : (주)오가피는 자체건강전문대리점(53호점) 및 대형마트(이마트 등)의 유통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체유통 판매망 활용으로 단 시간 내에 산업화를 통한 이익창출이 가능하며, 단기적(1~2년)으로는 5억 이상, 장기적으로는 연간 20억 원 이상 기대

③ 활용방안

- 사업화 : 오가피-발효물을 이용한 산업화를 통한 이익창출
- 기타 활용방안 : 지적재산권 획득, 얻어진 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기능성 소재 및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 세미나 및 논문발표를 통한 우수성 홍보, 오가피-발효물소재의 관련 산업(의약, 화장품 등 생명산업)에 활용방안 탐색

□ 종합평가(점수제)

▶ 연구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구분	1) 개발목표의 명확성(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개발목표 설정의 명확성)
5점	해당 연구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가 산업적으로 필요성·시의성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개발목표의 설정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해당 연구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가 산업적으로 필요성·시의성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개발목표 설정이 전반적으로 타당하여 성공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기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해당 연구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가 산업적으로 필요성·시의성이 인정되고 기술개발도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의 범용성이 부족하여 결과물의 활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을 통해 문제점 해결이 가능한 경우)
2점	해당 연구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가 산업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개발목표 설정이 불명확하여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을 통해서도 문제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1점	해당 연구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현재시점에서 필요성·시의성이 낮아 기술개발 완료 후에도 산업적으로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해당 연구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 필요성, 개발목표 설정이 불분명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2)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선행연구결과,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분석, 제시된 연구방법의 구체성, 개발목표의 달성 가능성정도)
5점	연구계획서상의 선행연구결과,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가 매우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추진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와 연구추진계획과의 연관성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 중 일부(예: 특허분석) 항목의 사전조사내용이 연구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사전조사 내용을 고려할 때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 중 한 가지 분야만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 등 선행연구조사가 부실하여 연구목표 달성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의 선행연구조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와 일부만 연관성이 있어 연구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가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 목표와 전혀 일치하지 않거나 공란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3) 연구범위의 타당성(연구범위 설정과 총괄목표의 부합성, 연구의 핵심과 세부과제간의 연결성, 연구계획의 신규성)
5점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주제)의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범위가 매우 타당하고 연구계획의 신규성이 인정되면서 세부과제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4점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주제)의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범위가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연구계획의 신규성이 인정되면서 세부과제 구성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점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주제)의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범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구계획의 신규성이나 세부과제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음. 단, 연구계획서의 일부를 수정할 경우 연구 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주제)의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범위가 축소되어 있거나 세부과제간의 연결성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연구 추진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주제)의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연구범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부과제 구성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연구추진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과제(주제)의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범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계획의 신규성이 부족하며 세부과제 구성이 적절하지 않아 연구를 수행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구분	4) 연구 수행계획의 합리성(연차별(단계별) 기술개발계획의 합리성)
5점	연구계획서상의 각 세부과제별로 연차별(단계별) 연구수행계획이 매우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의 각 세부과제별로 연차별(단계별) 연구수행계획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수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의 각 세부과제별로 연차별(단계별) 연구수행계획이 일부 중복되거나 일정연차에 연구계획이 집중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연구수행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단, 연차별 연구계획을 일부 수정할 경우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의 각 세부과제별로 연차별(단계별) 연구수행계획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연차별로 동일실험을 반복하거나 동일연구내용을 세부과제별로 중복 추진함으로써 합리적인 연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의 각 세부과제별로 연차별(단계별) 연구수행계획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연구목표 달성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의 각 세부과제별로 연차별(단계별) 연구수행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개발에 실패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5) 세부연구과제의 적절성(총괄 및 세부(협동)과제 목표의 연계성, 세부(협동)과제들의 구성의 적절성)
5점	연구계획서상 총괄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괄, 세부(협동)연구과제간의 연구목표가 명확하고 세부과제 구성이 매우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 총괄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괄, 세부(협동)연구과제간의 연구목표가 명확하고 세부과제 구성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 총괄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괄, 세부(협동)연구과제간의 연구목표는 합리적이거나 일부 세부과제 구성(연구주제, 연구진)의 보완을 할 경우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 총괄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괄, 세부(협동)연구과제간의 연구목표가 명확하지 못하고 일부 세부과제 구성(연구주제, 연구진)의 보완을 하더라도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 총괄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괄, 세부(협동)연구과제간의 연구목표가 명확하지 못하고 세부과제간 연계성 및 세부과제들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아 성공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 총괄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괄, 세부(협동)연구과제간의 합리적인 연구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세부과제간 연계성 및 세부과제들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아 연구개발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6) 연구개발비 규모·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절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5점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이 목표달성을 위해 매우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방법이 체계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이 목표달성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연구방법 중 일부가 적절하지 못하지만 연구계획서의 일부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연구방법 중 일부가 적절하지 못하고 연구계획서의 일부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연구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연구방법 중 2가지 이상이 적절하지 못해 연구를 수행할 경우 성공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연구방법이 전반적으로 적절하지 못해 연구개발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구분	7)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
5점	연구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가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연구성과의 혁신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가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연구성과의 혁신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는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연구성과가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해 혁신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농업현장으로 적용되어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양적인 연구성과 목표는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질적인 성과목표 제시가 부족하고 개발된 연구성과가 혁신성이 미흡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의미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 제시가 연구계획(연구비, 연구기간)대비 매우 미흡하거나 개발된 연구성과의 혁신성이 부족하여 과학기술적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 제시가 없고 혁신성도 부족하여 연구성과의 목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8) 연구개발목표의 혁신성(개발목표기술이나 제품의 참신성, 개발기술의 진보성)
5점	연구계획서상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의 혁신성, 제품의 참신성, 개발기술의 진보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의 혁신성, 제품의 참신성, 개발기술의 진보성이 전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의 혁신성, 제품의 참신성, 개발기술의 진보성이 다소 미흡하나 농업현장으로 적용되어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의 혁신성, 제품의 참신성, 개발기술의 진보성이 미흡하여 과학기술적인 의미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의 혁신성, 제품의 참신성, 개발기술의 진보성이 매우 미흡하여 과학기술적으로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 제시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목표의 혁신성, 제품의 참신성, 개발기술의 진보성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

구분	9) 개발기술의 산업화(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5점	개발된 연구결과가 실용화(기술이전, 현장교육 및 컨설팅 등) 및 산업화(제품생산, 고용창출, 매출액 발생)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과제 또는 연구개발결과가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개발된 연구결과가 실용화(기술이전, 현장교육 및 컨설팅 등) 및 산업화(제품생산, 고용창출, 매출액 발생)가 예상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개발된 연구결과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응용기술 개발)되지만 당장 실용화(기술이전, 현장교육 및 컨설팅 등) 및 산업화(제품생산, 고용창출, 매출액 발생)는 쉽지 않아 연구계획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경우 실용화·산업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개발된 연구결과가 실용화(기술이전, 현장교육 및 컨설팅 등) 및 산업화(제품생산, 고용창출, 매출액 발생)가 쉽지 않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개발된 연구결과가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실용화(기술이전, 현장교육 및 컨설팅 등) 및 산업화(제품생산, 고용창출, 매출액 발생)가 거의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개발된 연구결과가 실용화(기술이전, 현장교육 및 컨설팅 등) 및 산업화(제품생산, 고용창출, 매출액 발생)를 목표 및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거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p>▷ 종합평가(점수제)의 세부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선정의견으로 평가된 과제라 할지라도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연구방법론이 개선되어 효과적인 결과도출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의견 작성이 필요합니다.</p> <p>*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p>

○ 작성예시

- **(추진전략)** 해당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안한 “오가피 발효물을 이용하여 간 기능 개선효능을 갖는 식품 및 식품소재개발”의 1세부과제(오가피 발효기술을 통한 발효물 소재의 표준화 등)의 세부 기술인 안전성 확보 및 인체실험과 2세부과제(개별 인정형 소재개발)가 1년차 연구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차년도에는 개별인정형 소재개발을 수행하고 해당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 안정성 확보 및 인체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 수행방법으로 판단됨.
- **(연구팀의 구성)**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팀 구성은 전반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1세부과제인 “오가피 발효물 소재의 표준화 등”에 있어서 연구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참여연구원 중 식품발효 관련 연구실적이 미미(단, 식품가공분야 실적은 일부 있음)함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보완하여 참여연구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실용화 · 산업화)** 해당 연구과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SCI 2편 이상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기술의 혁신성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당기술에 대한 실용화를 위해 기술이전 및 산업화 목표 제시가 미비함. 따라서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계획 등 성과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여기업 변경)** 해당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신청한 (주)대도

식품은 사업 주력종목이 학교급식 업체로서 참여기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됨. 다만 신규로 기능성식품 사업에 진출을 목표로 과제에 참여한 경우라고 한다면 연구계획서 내에 (주)대도식품의 신규사업계획서를 추가한 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과제선정 제외 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 종합평가(점수제)에서 60점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선정 과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선정과제에서 제외된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평가(점수제)의 항목별로 3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의견을 서술해 주십시오.

*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

- **(연구수행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오가피 발효물을 이용하여 간 기능 개선효능을 갖는 식품 및 식품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목표 대비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범위가 과도함(제안한 연구비로는 인체적용시험까지는 무리한 계획으로 사료됨)
- **(연구수행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해당 연구계획서에는 총 7가지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과제의 특성상 주관기관은 제품개발을 협동연구기관은 기능성 규명의 역할로 협업체제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부분의 연구를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연구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법론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연구계획서상에는 소재 및 제품개발을 통해 실용화 및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오가피 발효물의 생산규모 또는 시장 규모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파급효과와 농가 소득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음
- **(연구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해당연구에 필요한 연구·실험장비 및 시설 보유현황이 불명확하고 연구비 소요현황을 검토해 보면 과제 선정 후 구입·임대계획만을 제시하고 있어 과제 선정 시 연구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사·중복성에 대한 의견

▷ 농기평에서 연구계획서와 함께 서면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한 “유사·중복과제”의견서를 검토하여 연구방법론 및 기술의 유사도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과제명이 중복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부기술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중복일 경우 선정제외 의견을 작성해 주시고 중복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선정 시 중복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연구과제명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① 유사·중복성이 없는 과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유사·중복과제”의견서와 해당 연구계획서의 연구내용 및 범위를 비교·검토한 결과 연구내용이 창의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작성예시② 유사·중복성이 없지만 “연구과제명”이 유사하여 중복논란이 있을 경우

- 연구계획서의 과제명이 “오가피 발효물을 이용하여 간기능 개선효능을 갖는 식품 및 식품소재개발”으로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현재 자체 경상연구로 수행중인 “천연물을 활용한 간 기능 개선효능을 갖는 식품소재 개발연구”와 유사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연구내용 검토결과 한식연 연구는 헛개나무 추출물을 활용하는 바 소재에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작성예시③ 유사·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계획서 내용 중 오가피 발효물에 대한 간 기능 개선에 대한 효능 확인 연구는 식약청에서 2011년 용역연구로 추진한 “국내산 자생식물의 간 기능 개선 규명연구”과제에서 이미 연구를 완료하여 인체적용시험중인 분야로서 중복성이 높은 과제임. 따라서 해당 연구내용을 조정하거나 선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5. 자유응모과제(공개발표평가) 선정평가 작성예시

▷ (예시사례) 자유응모과제 연구계획서 내용

▶ 과제명 : 오가피 발효물을 이용하여 간 기능 개선효능을 갖는 식품 및 식품소재개발(연구기간 3년, 정부출연금 4억, 기업부담금 1억 4천)

▶ 주관연구기관 : (주)오가피, 협동연구기관 : 관양대학교

• (연구목표)

① 오가피-발효기술을 통해 얻은 발효물 소재의 표준화 확립, 체계적인 효능평가, 안전성확보 및 인체실험 등을 통한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

② 오가피-발효물의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소재 개발은 오가피 관련 농림산업의 발전과 관련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우수소재개발을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할 제품개발 및 산업화를 목표로 함.

• (연구내용)

① 오가피-발효물소재의 최적배양조건(액체 및 고체) 확립 및 대량 생산 조건 확립

② 오가피-발효물소재의 표준화 작업 확립 오가피-발효물의 유효성분 분석 및 지표물질 선정

③ 오가피-발효물소재의 간 기능 개선에 대한 효능 확인 : in vitro/ in vivo test

④ 오가피-발효물소재의 안전성 및 안정성확보

⑤ 오가피-발효물소재의 인체실험을 통한 효능 검토

⑥ 오가피-발효물소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간 기능 개선 분야의 개별인정 신청

⑦ 오가피-발효물소재를 활용한 유통별 다양한 제형 및 제품개발 산업화

•(기대효과)

① 기술적인 측면의 기대성과

- 발효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갖는 소재 개발로 1차 및 2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연구원의 소재 및 제품개발방법과 효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 방법 습득을 기술축적
- 오가피-발효물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는, 관련기술을 체계화 및 파급효과에 기여

②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에 따른 수익 : (주)오가피는 자체건강전문대리점(53호점) 및 대형마트(이마트 등)의 유통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체유통 판매망 활용으로 단시간 내에 산업화를 통한 이익창출이 가능하며, 단기적(1~2년)으로는 5억 이상, 장기적으로는 연간 20억 원 이상 기대

③ 활용방안

- 사업화 : 오가피-발효물을 이용한 산업화를 통한 이익 창출
- 기타 활용방안 : 지적재산권 획득, 얻어진 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기능성 소재 및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 세미나 및 논문발표를 통한 우수성 홍보, 오가피-발효물소재의 관련산업(의약, 화장품 등 생명산업)에 활용방안 탐색

□ 종합평가(점수제)

▶ 연구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구분	1) 개발목표의 명확성(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개발목표 설정의 명확성)
5점	해당 연구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가 산업적으로 필요성·시의성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개발목표의 설정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해당 연구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가 산업적으로 필요성·시의성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개발목표 설정이 전반적으로 타당하여 성공적인 연구 결과 도출이 기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해당 연구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가 산업적으로 필요성·시의성이 인정되고 기술개발도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의 범용성이 부족하여 결과물의 활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을 통해 문제점 해결이 가능한 경우)
2점	해당 연구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가 산업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의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개발목표 설정이 불명확하여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을 통해서도 문제점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1점	해당 연구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가 현재시점에서 필요성·시의성이 낮아 기술개발 완료 후에도 산업적으로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해당 연구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 필요성, 개발목표 설정이 불분명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2)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선행연구결과,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분석, 제시된 연구방법의 구체성, 개발목표의 달성 가능성정도)
5점	연구계획서상의 선행연구결과,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가 매우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추진 계획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와 연구추진계획과의 연관성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 중 일부(예: 특허분석) 항목의 사전조사내용이 연구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사전조사 내용을 고려할 때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 중 한 가지 분야만 사전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 등 선행연구조사가 부실하여 연구목표 달성에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의 선행연구조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와 일부만 연관성이 있어 연구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가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 목표와 전혀 일치하지 않거나 공란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3) 연구범위의 타당성(연구범위 설정과 총괄목표의 부합성, 연구의 핵심과 세부과제간의 연결성, 연구계획의 신규성)
5점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주제)의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범위가 매우 타당하고 연구계획의 신규성이 인정되면서 세부과제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4점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주제)의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범위가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연구계획의 신규성이 인정되면서 세부과제 구성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3점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주제)의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범위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구계획의 신규성이나 세부과제 구성에 다소 문제가 있음. 단, 연구계획서의 일부를 수정할 경우 연구 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주제)의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범위가 축소되어 있거나 세부과제간의 연결성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연구 추진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주제)의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연구범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부과제 구성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연구추진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과제(주제)의 총괄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범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계획의 신규성이 부족하며 세부과제 구성이 적절하지 않아 연구를 수행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구분	4) 연구 수행계획의 합리성(연차별(단계별) 기술개발계획의 합리성)
5점	연구계획서상의 각 세부과제별로 연차별(단계별) 연구수행계획이 매우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의 각 세부과제별로 연차별(단계별) 연구수행계획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구수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의 각 세부과제별로 연차별(단계별) 연구수행계획이 일부 중복되거나 일정연차에 연구계획이 집중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연구수행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단 연차별 연구계획을 일부 수정할 경우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의 각 세부과제별로 연차별(단계별) 연구수행계획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연차별로 동일실험을 반복하거나 동일연구내용을 세부과제별로 중복 추진함으로써 합리적인 연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의 각 세부과제별로 연차별(단계별) 연구수행계획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연구목표 달성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의 각 세부과제별로 연차별(단계별) 연구수행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개발에 실패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5) 세부연구과제의 적절성(총괄 및 세부(협동)과제 목표의 연계성, 세부(협동)과제들의 구성의 적절성)
5점	연구계획서상 총괄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괄, 세부(협동)연구과제간의 연구목표가 명확하고 세부과제 구성이 매우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 총괄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괄, 세부(협동)연구과제간의 연구목표가 명확하고 세부과제 구성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 총괄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괄, 세부(협동)연구과제간의 연구목표는 합리적이거나 일부 세부과제 구성(연구주제, 연구진)을 보완을 할 경우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 총괄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괄, 세부(협동)연구과제간의 연구목표가 명확하지 못하고 일부 세부과제 구성(연구주제, 연구진)의 보완을 하더라도 체계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 총괄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괄, 세부(협동)연구과제간의 연구목표가 명확하지 못하고 세부과제간 연계성 및 세부과제들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아 성공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 총괄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괄, 세부(협동)연구과제간의 합리적인 연구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세부과제간 연계성 및 세부과제들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아 연구개발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6) 연구개발비 규모·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절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5점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이 목표달성을 위해 매우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방법이 체계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이 목표달성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연구방법 중 일부가 적절하지 못하지만 연구계획서의 일부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연구 방법중 일부가 적절하지 못하고 연구계획서의 일부 수정·보완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연구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연구방법 중 2가지 이상이 적절하지 못해 연구를 수행할 경우 성공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연구기간, 연구방법이 전반적으로 적절하지 못해 연구개발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구분	7)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
5점	연구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가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연구 성과의 혁신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가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연구 성과의 혁신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는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연구 성과가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해 혁신성은 다소 미흡하지만 농어업현장으로 적용되어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양적인 연구성과 목표는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질적인 성과목표 제시가 부족하고 개발된 연구성과가 혁신성이 미흡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의미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 제시가 연구계획(연구비, 연구기간)대비 매우 미흡하거나 개발된 연구성과의 혁신성이 부족하여 과학기술적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에서 제시한 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 제시가 없고 혁신성도 부족하여 연구성과의 목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8) 연구개발목표의 혁신성(개발목표기술이나 제품의 참신성, 개발기술의 진보성)
5점	연구계획서상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의 혁신성, 제품의 참신성, 개발기술의 진보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의 혁신성, 제품의 참신성, 개발기술의 진보성이 전반적으로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의 혁신성, 제품의 참신성, 개발기술의 진보성이 다소 미흡하나 농어업현장으로 적용되어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의 혁신성, 제품의 참신성, 개발기술의 진보성이 미흡하여 과학기술적인 의미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의 혁신성, 제품의 참신성, 개발기술의 진보성이 매우 미흡하여 과학기술적으로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목표 제시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목표의 혁신성, 제품의 참신성, 개발기술의 진보성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

구분	9) 개발기술의 산업화(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5점	개발된 연구결과가 실용화(기술이전, 현장교육 및 컨설팅 등) 및 산업화(제품생산, 고용창출, 매출액 발생)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과제 또는 연구개발결과가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개발된 연구결과가 실용화(기술이전, 현장교육 및 컨설팅 등) 및 산업화(제품생산, 고용창출, 매출액 발생)가 예상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개발된 연구결과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응용기술 개발)되지만 당장 실용화(기술이전, 현장교육 및 컨설팅 등) 및 산업화(제품생산, 고용창출, 매출액 발생)는 쉽지 않아 연구계획서 내용을 일부 조정 할 경우 실용화·산업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개발된 연구결과가 실용화(기술이전, 현장교육 및 컨설팅 등) 및 산업화(제품생산, 고용창출, 매출액 발생)가 쉽지 않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개발된 연구결과가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실용화(기술이전, 현장교육 및 컨설팅 등) 및 산업화(제품생산, 고용창출, 매출액 발생)가 거의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개발된 연구결과가 실용화(기술이전, 현장교육 및 컨설팅 등) 및 산업화(제품생산, 고용창출, 매출액 발생)를 목표 및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거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과제선정 필요시 보완사항 등 의견

▷ 종합평가(점수제)의 세부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선정의견으로 평가된 과제라 할지라도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연구방법론이 개선되어 효과적인 결과도출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의견 작성이 필요합니다.

*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

- **(추진전략)** 해당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안한 “오가피 발효물을 이용하여 간 기능 개선효능을 갖는 식품 및 식품소재개발”의 1세부과제(오가피 발효기술을 통한 발효물 소재의 표준화 등)의 세부 기술인 안전성 확보 및 인체실험과 2세부과제(개별 인정형 소재개발)가 1년차 연구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차년도에는 개별인정형 소재개발을 수행하고 해당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 안정성 확보 및 인체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 수행방법으로 판단됨.
- **(연구팀의 구성)**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팀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1세부과제인 “오가피 발효물 소재의 표준화 등”에 있어서 연구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참여연구원 중 식품발효관련 연구실적이 미미(단, 식품가공분야 실적은 일부 있음)함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를 보완하여 참여연구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실용화 · 산업화)** 해당 연구과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SCI 2편 이상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기술의 혁신성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당기술에 대한 실용화를 위해 기술이전 및 산업화 목표 제시가 미비함. 따라서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계획 등 성과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여기업 변경)** 해당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신청한 (주)대도

식품은 사업 주력종목이 학교급식 업체로서 참여기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됨. 다만 신규로 기능성식품사업에 진출을 목표로 과제에 참여한 경우라고 한다면 연구계획서 내에 (주)대도식품의 신규사업계획서를 추가한 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과제선정 제외 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 ▷ 종합평가(점수제)에서 60점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선정 과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선정과제에서 제외된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평가(점수제)의 항목별로 3점 미만의 점수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의견을 서술해 주십시오.
- * 해당 평가에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

- **(연구수행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오가피 발효물을 이용하여 간 기능 개선효능을 갖는 식품 및 식품소재개발에 대한 연구목표 대비 연구계획서상의 연구범위가 과도함 (제안한 연구비로는 인체적용시험까지는 무리한 계획으로 사료됨)
- **(연구수행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해당 연구계획서에는 총 7가지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과제의 특성상 주관기관은 제품개발을 협동연구기관은 기능성 규명의 역할로 협업체제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부분의 연구를 협동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연구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법론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연구계획서상에는 소재 및 제품개발을 통해 실용화 및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오가피 발효물의 생산규모 또는 시장 규모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파급효과와 농가 소득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음
- **(연구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해당연구에 필요한 연구·실험장비 및 시설 보유현황이 불명확하고 연구비 소요현황을 검토해 보면 과제 선정 후 구입·임대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어 과제선정 시 연구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유사·중복성에 대한 의견

▷ 농기평에서 연구계획서와 함께 서면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한 “유사·중복과제”의견서를 검토하여 연구방법론 및 기술의 유사도에 대해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과제명이 중복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부기술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중복일 경우 선정제외 의견을 작성해 주시고 중복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선정 시 중복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연구과제명을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① 유사·중복성이 없는 과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 “유사·중복과제”의견서와 해당 연구계획서의 연구내용 및 범위를 비교·검토한 결과 연구내용이 창의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작성예시② 유사·중복성이 없지만 “연구과제명”이 유사하여 중복논란이 있을 경우
 - 연구계획서의 과제명이 “오가피 발효물을 이용하여 간 기능 개선효능을 갖는 식품 및 식품소재개발”으로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현재 자체 경상연구로 수행중인 “천연물을 활용한 간 기능 개선효능을 갖는 식품소재 개발연구”와 유사성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연구내용 검토 결과 한식연 연구는 헛개나무 추출물을 활용하는바 소재에서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작성예시③ 유사·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계획서 내용 중 오가피 발효물에 대한 간 기능 개선에 대한 효능 확인 연구는 식약청에서 2011년 용역연구로 추진한 “국내산 자생식물의 간 기능 개선 규명연구”과제에서 이미 연구를 완료하여 인체적용시험중인 분야로서 중복성이 높은 과제임. 따라서 해당 연구내용을 조정하거나 선정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적정·연구개발비 및 기간사정

▷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총 정부지원 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 연구비, 총 연구기간을 검토하여 적정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사정(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구분	총 정부지원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
신청내용	300,000천원	100,000천원	3년
사정내용	270,000천원	90,000천원	3년

참고자료 6. 자유응모과제(정책부합성평가) 선정평가 작성예시

▷ (예시사례) 자유응모과제 연구계획서 내용

▶ 과제명 : 오가피 발효물을 이용하여 간 기능 개선효능을 갖는 식품 및 식품소재개발(연구기간 3년, 정부출연금 4억, 기업부담금 1억 4천)

▶ 주관연구기관 : (주)오가피, 협동연구기관 : 관양대학교

• (연구목표)

① 오가피-발효기술을 통해 얻은 발효물 소재의 표준화 확립, 체계적인 효능평가, 안전성확보 및 인체실험 등을 통한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

② 오가피-발효물의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소재 개발은 오가피 관련 농림산업의 발전과 관련 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우수소재개발을 통한 수출증대에 기여할 제품개발 및 산업화를 목표로 함.

• (연구내용)

① 오가피-발효물소재의 최적배양조건(액체 및 고체) 확립 및 대량 생산 조건 확립

② 오가피-발효물소재의 표준화 작업 확립 오가피-발효물의 유효성분 분석 및 지표물질 선정

③ 오가피-발효물소재의 간 기능 개선에 대한 효능 확인 : in vitro/ in vivo test

④ 오가피-발효물소재의 안전성 및 안정성확보

⑤ 오가피-발효물소재의 인체실험을 통한 효능 검토

⑥ 오가피-발효물소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간 기능 개선 분야의 개별인정 신청

⑦ 오가피-발효물소재를 활용한 유통별 다양한 제형 및 제품개발 산업화

• (기대효과)

① 기술적인 측면의 기대성과

- 발효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갖는 소재 개발로 1차 및 2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연구원의 소재 및 제품개발방법과 효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 방법 습득을 기술축적
- 오가피-발효물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는, 관련기술을 체계화 및 파급효과에 기여

②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화에 따른 수익 : (주)오가피는 자체건강전문대리점(53호점) 및 대형마트(이마트 등)의 유통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체유통 판매망 활용으로 단시간 내에 산업화를 통한 이익창출이 가능하며, 단기적(1~2년)으로는 5억 이상, 장기적으로는 연간 20억 원 이상 기대

③ 활용방안

- 사업화 : 오가피-발효물을 이용한 산업화를 통한 이익창출
- 기타활용방안 : 지적재산권 획득, 얻어진 결과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기능성 소재 및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관한 기초 자료로 활용, 세미나 및 논문발표를 통한 우수성 홍보, 오가피-발효물소재의 관련 산업(의약, 화장품 등 생명산업)에 활용방안 탐색

구분	1) 연구내용의 충실성
5점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범위 및 내용이 매우 적절하고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성된 경우
4점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범위 및 내용이 적절하고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대비 연구범위 및 방법론이 일부 부적합하나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경우 연구목표 달성에 무리가 없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대비 연구범위 및 방법론이 미비하게 구성되어 있고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더라도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대비 연구범위 및 방법론이 일부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대비 연구범위 및 방법론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2) 농어업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5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부합하고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 등이 정책목표 달성에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4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이 정책목표 달성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일부 차이점이 있으나 사업 추진방법 및 전략을 수정·보완할 경우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상당(50% 이상)부분 차이점이 있으며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더라도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일부분(30% 이하)만 반영되어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3)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서
5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고 연구팀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고 연구팀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팀의 구성 및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나 연구팀 및 참여연구원의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성공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팀의 구성이 미흡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수행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팀의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연구진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연구진에 해당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구개발에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평가의견

<p>▷ 종합평가(점수제)의 세부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의견 판단한 경우 조정해야 할 내용과 선정 제외로 판단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의견으로 평가된 과제라 할지라도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정책과의 부합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보완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제외 의견일 경우 정책부합적인 측면에서 탈락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p>*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p>
--

○ 작성예시① 선정의견일 경우

- **(사업내용)** 해당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안한 “오가피 발효물을 이용하여 간 기능 개선효능을 갖는 식품 및 식품소재개발”은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7가지 세부연구내용에 대한 추진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해당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 오가피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 생산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예시)인 “국내산 자생식물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 지원사업”의 기반사업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사료되며 향후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국내산 자생식물 중 오가피가 핵심 소재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과제를 제안한 (제1세부과제) (주)오가피(이기유 박사팀)와 (제2세부과제) 관양대학교 (홍철진 교수팀)는 해당분야(천연물질 분석·실험) 연구실적이 풍부하여 해당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관양대 홍철진 교수팀의 경우 2010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연구를 통해 추진한 “헛개나무 추출물의 기능성평가”(예시) 연구를 수행하여 국내산 자생식물에 대한 기능성 규명연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례가 있는 등 연구진의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작성예시② 선정 제외의견일 경우

- **(사업내용)** 해당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안한 “오가피 발효물을 이용하여 간 기능 개선효능을 갖는 식품 및 식품 소재개발”은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7가지 세부연구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제1세부과제 연구내용에서 “오가피의 안전성 확보실험”에 대한 내용이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제2세부과제의 “간 기능 개선에 대한 효능 확인을 위한 in vivo 실험”의 경우 구체적인 실험동물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예시)인 “국내산 자생식물의 고부가가치 식품산업화 지원사업”의 핵심 지원분야가 1차 생산가공 분야로서 해당과제의 “오가피 발효물을 이용한 식품소재”개발은 정책사업과 합치성이 낮음. 발효 생산물에 대한 식품소재 개발사업은 2015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으로 본 과제의 사업목적 및 현장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과제를 제안한 (제1세부) (주)오가피(이기유 박사팀)은 기능성 물질 분석 및 제품개발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제2세부) 관양대학교 (홍철진 교수팀)는 기능성제품 개발 분야의 실적이 미미 할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여 당초 목표한 연구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7. 연구사업단(서면·공개평가서) 선정평가 작성예시

▷ (예시사례)연구사업단 연구계획서 내용

▶ 과제명 : 백합수출연구사업단(연구기간 5년, 정부출연금 44억 원, 기업부담금 7.16억 원)

▶ 주관연구기관 : 단국대학교, 협동연구기관 : 한국농수산대 외 4개 기관

• (연구목표)

① 수출 절화 백합 2,500 만 불(5년차) 달성 및 지역별 networking

② 향후 5년 후에는 우량 종구 급속대량 증식 및 개화구 생산 기술의 현장 접목으로 개화구 2,000만구(120억 상당) 자급 달성과 향후 10년 이내에 종구 8,000만구(480억 상당) 생산과 8,000만 불상당의 절화 백합 생산 기술의 기반조성

• (연구내용)

① 수출확대 증진전력 개발 및 적용

- 수출국별 시장 분석
- 수출확대 전략 수립 및 기술 개발 지원

② 수출 절화백합 생산전문단지 육성을 위한 현장 기술 개발 및 산업화

- 수출국 기호성 품종선발 및 상품성분석
- 수출백합전문 단지 육성
- 수출백합기획 상품생산 기술 및 현장지원
- 병충해 방제 현장지원

③ 수출용 신품종 및 종구생산전문단지 육성을 위한 현장

기술개발 및 산업화

- 우량종구 및 개화구 생산 전문단지 기술 개발 및 현장화
 - 수출 백합 신품종 육성
 - 생력·생산비 절감형 절화 재배 작형개발
- ④ 수출용 절화상품 및 구근의 수확 후 저장기술 개발 및 현장화
- 수출 상품의 품질관리 기술
- (기대효과)
- ① 향후 10년 이내에 8,000만본 이상의 절화 백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적 명품화 시킬 수 있는 기술력 보유
 - ② 백합 생산 현장 애로기술 컨설팅으로 고품질 절화 백합의 기존 수출량의 극대화 및 신규 수출국 개척 및 확대 기대
 - ③ 수출용 상품 생산을 위한 신품종 및 종구, 개화구 생산 전문단지화로 수출 경쟁력 확보
 - ④ 출하 전/후 및 유통시 품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전/후 처리 기술 개발 및 cold chain 시스템 구축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수출시 절화의 신선도 유지 및 고등급 평가

□ 종합평가(점수제)

▶ 사업계획의 우수성(25)

구분	1) 개발목표 및 내용의 충실성, 명확성, 부합성
5점	백합 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관리·마케팅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내용이 체계적이고 창의적이며 RFP의 제시내용과 매우 충족하는 경우
4점	백합 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관리·마케팅 구축을 위한 연구내용의 창의성, 과제구성의 체계 및 RFP의 제시내용이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는 경우
3점	백합 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관리·마케팅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연구내용이 RFP 제시내용을 전반적으로 충족하고 있으나 과제구성의 체계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음. 단, 연구계획서의 일부를 수정을 해야만 연구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백합 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관리·마케팅 구축을 위한 연구내용이 RFP 제시내용 중 일부(백합 생산기술에 한정)만 제시하고 있어 과제구성 체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1점	백합 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관리·마케팅 구축을 위한 RFP 제시내용이 없거나 과제구성체계가 연구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경우
0점	백합 수출 확대를 위한 생산·관리·마케팅 구축과 전혀 상이한 연구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해당과제가 선정될 경우 연구개발이 실패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2) 연구개발 전략의 합리성, 적정성
5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을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론이 적정하고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이 매우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구성된 경우
4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을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론,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을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론 및 추진전략이 일부 다르지만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목표한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을 수행을 위한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 및 추진전략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구방법론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목표한 결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RFP에서 제시된 연구범위 및 내용을 수행을 위한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 및 추진전략에 대한 설계한 합리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론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단계별 추진전략의 명확성, 연구방법론의 적정성, 연차별, 세부연구기관별(연구개발비 포함) 업무분담 등이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구분	3) 관련기술에 대한 선행연구실적, 시장분석, 특허(논문) 분석정도
5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가 매우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백합 수출 관련 기술개발)달성을 위한 연구추진계획과의 연관성이 밀접한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가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작성되어 있고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백합 수출 관련 기술개발)와 연구추진계획과의 연관성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 중 일부(예 : 특허분석) 항목의 사전조사내용이 연구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나 전체적인 사전조사내용이 연구수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 중 한 가지 분야만 사전조사가 이루어져 있어 선행연구조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의 선행연구조사 내용이 RFP의 제시내용의 일부만 해당되어 보고서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의 특허, 논문, 제품(시장)분석 보고서를 공란으로 작성하거나 전혀 다른 선행연구조사를 기술한 경우

▶ 연구사업단 운영의 적정성(25)

구분	4) 연구사업단 운영체계의 적합성
5점	연구사업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팀 구성, 연구추진체계, 추진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체계가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사업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팀 구성, 연구추진체계, 추진전략 등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운영체계가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사업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팀 구성, 연구추진체계, 추진전략 등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나 연구계획서의 사업 운영체계를 보완할 경우 무리 없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사업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팀 구성, 연구추진체계, 추진전략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연구계획서의 사업 운영체계를 보완하더라도 사업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사업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팀 구성, 연구추진체계, 추진전략 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연구계획서의 사업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더라도 사업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사업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팀 구성, 연구추진체계, 추진전략 등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체계로서 전혀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 실패가 예상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분	5) 협동연구팀의 연구수행 능력 및 유기적 협력체계의 적정성
5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 실적이 해당 연구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일치하는 경우(예 : 백합생산자, 수출·유통 전문가, 화훼연구진 포함)
4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 실적이 해당 연구과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경우
3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실적 중 일부 일치하지 않지만(예 : 주요 연구 실적이 백합 수출·마케팅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R&D 측면에서는 백합보다 장미·카라 생산관련 기술 등의 실적 중심) 동종분야(화훼)이기 때문에 과제수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능력이 적정하나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 실적이 상이(예 : 동물전공자 참여, 수출 전문가 미참여, 수확 후 관리기술 전문가 미참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연구원의 전공 및 주요 연구실적이 상이하거나(예 : 동물전공자 참여, 수출 전문가 미참여, 수확 후 관리기술 전문가 미참여) 미비하여 정상적인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팀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전공이 및 주요 연구실적이 일치하지 않아 해당 연구과제의 목표를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대효과(30)

구분	6) 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5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을 통한 실용화·산업화 가능성이 높고 국가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
4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실용화·산업화(기술이전 및 시제품 개발) 가능성이 높고 산업적으로 파급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실용화·산업화(기술이전 및 시제품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적 파급 효과가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해당기술의 실용화를 통한 백합 수출현장으로의 기술에 대한 실용화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고비용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해당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팀이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성과 도출이 힘들뿐만 아니라 실용화·산업화 및 산업적 파급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7) 기술개발 결과의 시장성
5점	전국 백합생산농가의 혁신적 생산 및 수출기술 개발 및 확산으로 수출용 백합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손실 최소화가 가능하여 사업목적인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전국 백합생산농가의 생산 및 수출기술 개발 및 확산으로 수출용 백합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손실 최소화가 가능하여 사업목적인 수출 확대에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해당 연구사업단이 제안한 백합생산 및 수출기술 개발이 수출용 백합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기술을 적용할 경우 생산단가, 규모화 문제 등으로 수출 시장성 및 경쟁력은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해당 연구사업단이 제안한 백합생산 및 수출기술 개발 전략으로 수출용 백합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술을 수출백합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기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점	해당 연구사업단이 제안한 백합생산 및 수출기술 개발 전략으로 수출용 백합은 고사하고 국내 내수용 시장에 적용하기에도 기술적 수준이 낮아 시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해당 연구사업단이 제안한 백합생산 및 수출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백합의 수출촉진을 위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고 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대응자금 규모(10)

구분	8) 연구기관·협력기관·산업체·지자체·생산자단체 등 대응자금 규모
5점	사업단 구성이 산·학·연·관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별로 대응자금의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여 매칭한 경우
4점	사업단 구성이 산·학·연·관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별로 대응자금의 규모가 적정하게 매칭된 경우
3점	사업단 구성이 산·학·연·관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별로 대응자금의 규모는 적정하게 매칭되어 있으나 일부 특정기관의 대응자금이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대응자금이 지자체는 0, 산업체가 100% 매칭한 경우)
2점	사업단 구성이 산·학·연·관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고 해당 기관별로 대응자금의 규모가 기준 미만으로 제안되어 연구기관의 사업참여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대응자금 기준이 100인 경우 70~100 미만 수준으로 매칭한 경우)
1점	사업단 구성이 산·학·연·관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고 해당 기관별로 대응자금의 규모가 기준 미만인면서 소액만 제안되어 연구기관의 사업참여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대응자금 기준이 100인 경우 30미만 수준으로 매칭한 경우)
0점	사업단 구성이 산·학·연·관으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못하고 해당 기관별로 대응자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의 사업참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업단 특성(10)

구분	9) 연구사업단 특성에 따라 사업담당관이 정하는 기준
5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을 매우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을 전반적으로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중 일부 충족하지 못하지만 연구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중 일부만 충족함에 따라 연구 수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1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0점	사업담당관이 제시한 “RFP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과 전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실패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

□ 적정 연구개발비 및 기간사정

▷ 연구계획서에서 제시한 총 정부지원 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 연구비, 총 연구기간을 검토하여 적정 연구비와 연구기간을 사정(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구분	총 정부지원연구비	1년차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
신청내용	5,000,000천원	1,000,000천원	5년
사정내용	4,000,000천원	800,000천원	5년

□ 종합의견

▷ 종합평가(점수제)의 세부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이때 선정의견으로 평가된 과제라 할지라도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연구방법론이 개선되어 효과적인 결과도출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의견 작성이 필요합니다.

*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

- **(추진전략)** 해당 연구사업단에서 제안한 “수출백합기획 상품생산 기술 및 현장지원”의 1세부과제(수출 절화백합 생산전문단지 육성을 위한 현장 기술 개발 및 산업화)의 세부 기술인 병충해 방제지원 연구와 2세부과제(수출용 절화상품 및 구근의 수확 후 저장기술 개발 및 현장화)의 “수출 상품의 품질관리 기술”이 1차년도 연구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차년도에는 병해충 방제 관련 기술개발을 실시하고 해당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 수출 상품의 품질관리 기술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 수행방법으로 판단됨.
- **(연구팀의 구성)**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팀의 구성은 전반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1세부과제인 “수출 절화백합 생산전문단지 육성을 위한 현장 기술 개발 및 산업화”에 있어서 연구책임자를 제외하고는 참여연구원 중 절화 백합생산 관련 연구실적이 미미(단, 화훼 생산 관련 실적은 일부 있음)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를 보완하여 참여연구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실용화·산업화)** 해당 연구과제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경우 SCI 10편 이상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등 기술의 혁신성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당기술에 대한 실용화를 위해 기술이전 및 산업화 목표 제시가 미비함. 따라서 해당기술의 기술이전 계획 등 성과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여기업 변경)** 해당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신청한 (주)꽃사랑은 사업 주력종목이 선인장 등 다육식물을 다루는 기업으로서 참여기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됨. 다만 신규로 백합, 장미 등 화훼수출사업에 진출을 목표로 과제에 참여한 경우라고 한다면 연구계획서 내에 (주)꽃사랑의 신규사업계획서를 추가한 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8. 연구사업단(정책부합성평가) 선정평가 작성예시

▷ (예시사례)연구사업단 연구계획서 내용

▶ 과제명 : 백합수출연구사업단(연구기간 5년, 정부출연금 44억 원, 기업부담금 7.16억 원)

▶ 주관연구기관 : 단국대학교, 협동연구기관 : 한국농수산대 외 4개 기관

• (연구목표)

① 수출 절화 백합 2,500 만 불(5년차) 달성 및 지역별 networking

② 향후 5년 후에는 우량 종구 급속대량 증식 및 개화구 생산 기술의 현장 접목으로 개화구 2,000만구(120억 상당) 자급 달성과 향후 10년 이내에 종구 8,000만구(480억 상당) 생산과 8,000만 불 상당의 절화 백합 생산 기술의 기반조성

• (연구내용)

① 수출확대 증진전력 개발 및 적용

- 수출국별 시장 분석
- 수출확대 전략 수립 및 기술 개발 지원

② 수출 절화백합 생산전문단지 육성을 위한 현장 기술 개발 및 산업화

- 수출국 기호성 품종선발 및 상품성분석
- 수출백합전문 단지 육성
- 수출백합기획 상품생산 기술 및 현장지원
- 병충해 방제 현장지원

③ 수출용 신품종 및 종구생산전문단지 육성을 위한 현장

기술개발 및 산업화

- 우량종구 및 개화구 생산 전문단지 기술 개발 및 현장화
 - 수출 백합 신품종 육성
 - 생력·생산비 절감형 절화 재배 작형개발
- ④ 수출용 절화상품 및 구근의 수확 후 저장기술 개발 및 현장화
- 수출 상품의 품질관리 기술
- (기대효과)
- ① 향후 10년 이내에 8,000만본 이상의 절화 백합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세계적 명품화 시킬 수 있는 기술력 보유
 - ② 백합 생산 현장 애로기술 컨설팅으로 고품질 절화 백합의 기존 수출량의 극대화 및 신규 수출국 개척 및 확대 기대
 - ③ 수출용 상품 생산을 위한 신품종 및 종구, 개화구 생산 전문단지화로 수출 경쟁력 확보
 - ④ 출하 전/후 및 유통 시 품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전/후 처리 기술 개발 및 cold chain 시스템 구축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수출시 절화의 신선도 유지 및 고등급 평가

□ 종합평가

구분	1)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5점	RFP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범위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성된 경우
4점	RFP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범위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연구계획서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3점	RFP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범위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중 일부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나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할 경우 연구목표 달성에 무리가 없는 경우
2점	RFP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범위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중 상당(50% 이상) 부분이 누락되어 있고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더라도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RFP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범위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 중 일부분(30% 이하)만 반영되어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RFP에서 제시한 개발목표, 연구범위 및 내용, 과제구성요건과 전혀 일치하지 않아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2) 농어업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5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RFP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부합하고 사업추진방법 및 전략 등이 정책목표 달성에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4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RFP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사업추진방법 및 전략이 정책목표 달성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RFP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일부 차이점이 있으나 사업추진방법 및 전략을 수정·보완할 경우 정책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RFP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상당(50% 이상)부분 차이점이 있으며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더라도 당초 연구목표를 달성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RFP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일부분(30% 이하)만 반영되어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과 RFP에서 제시한 사업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구분	3)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서
5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고 연구팀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고 연구팀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팀의 구성 및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나 연구팀 및 참여연구원의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성공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팀의 구성이 미흡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수행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팀의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연구진이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목표한 연구결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과제활용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업 현장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연구진에 해당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연구개발에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평가의견

<p>▷ 종합평가(점수제)의 세부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의견 판단한 경우 조정해야 할 내용과 선정 제외로 판단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의견으로 평가된 과제라 할지라도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현장정책과의 부합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보완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제외 의견일 경우 정책부합적인 측면에서 탈락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p>* 해당 평가예시는 연구계획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p>
--

○ 작성예시① 선정의견일 경우

- (사업내용) 해당 연구사업단에서 제안한 “수출용 절화

백합 병충해 방지기술”은 RFP에서 제시한 세부내용(절화 백합의 품질관리 기술개발)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 백합수출농가에서 사전에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제어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손실을 방지하게 되어 경영안정 및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농식품부 과수화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예시)인 “국내 화훼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의 기반사업으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사료되며 향후 기술개발이 완료된 후 “화훼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의 핵심 지원분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과제를 제안한 (제1핵심과제) 한국대학교 식물자원학과(김영규 교수팀)와 (제2핵심과제) 단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이미영 교수팀)는 해당분야 (절화백합 생산, 백합포장 디자인 개발) 연구 실적이 풍부하여 해당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특히 단국대학교 이미영 교수팀의 경우 2011년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용역연구를 통해 추진한 “수출용 화훼(장미, 선인장) 포장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예시) 연구를 수행하여 화훼류의 포장디자인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는 등 연구진의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작성예시② 선정 제외의견일 경우

- (사업내용) 해당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안한 제1핵심과제인 “수출용 절화백합 병충해 방지기술 개발”은 RFP에서 제시한 세부내용(절화백합의 품질관리 기술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제2핵심과제 연구내용(수출 백합의 시장분석 및 마케팅 연구)에서는 “절화백합의 수출시장 사전분석”, “수출용 포장 디자인 개발”은 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제3핵심과제의 “수출용 백합 구근생산 기술 개발”의 경우 실질적인 구근생산 품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 (현장정책과의 연계성) 농식품부 과수화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예시)인 “국내 화훼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의 핵심 지원분야가 “수출용 절화백합 생산기반” 구축인데 해당과제는 “수출용 구근생산 기술”로 한정하여 연구가 계획됨에 따라 정책적으로 합치성이 낮음. “구근생산”에 정책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으로 본 과제의 사업목적 및 현장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과제를 제안한 (제1핵심과제) 단국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이미영 교수팀)는 디자인 개발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제1핵심) 관양대학교 생명자원학과(송미경 교수팀)는 화훼 병해충 제어분야의 실적이 미미 할 뿐만 아니라 백합 병해충에 대한 실적이 전문하여 당초 목표한 연구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9. 중간서면평가 작성예시

▷ (예시사례)

- ▶ 과제명 :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기간 3년 이내, 연구비 3억 이내)
 - (필요성) 농가에서는 일정기간 사육 후 난계대 질병이 확인될 경우 도태·폐기하므로 국내 양계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비용 손실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화장·종계장과 농장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개발목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견강한 닭 사육을 통한 축산농가 보호 및 식중독 원인균의 오염요인을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 마련 및 산업화
 - (연구범위 및 내용)
 -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구축(난계대 질병 국내 실태 조사, 병아리 생산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 모형화 및 식별체계 개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개발)
 - 난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종계장 및 실용계농장 사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
 - (과제구성요건)
 - 산업체 참여 필수/ 3P 분석을 통한 기 수행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화 전략 제시 필수

□ 종합평가(점수제)

▶ 연구수행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구분	1) 목표의 중간달성도
5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을 충족하고 이를 초과하여 기술개발이 진행된 경우
4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전반적으로 달성된 경우
3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80%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나 연구추진 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연구계획의 변경을 통해서만 최종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2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50% 미만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전체적인 연구 계획의 수정을 통해서만 최종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1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30% 미만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하더라도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0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구분	2) 연구범위와 내용의 타당성
5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를 초과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전체연구 성과 도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내용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 내에서 연구를 수행 하였으나 계획서상의 연구범위의 오류로 인해 연구내용의 방향 재설정 이 필요한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 내에서 연구를 충실 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연구내용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 이외의 부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최종연구 성과 도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와 전혀 다른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목적인 연구결과의 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구분	3) 연구수행 전략의 적정성
5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 연구팀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과제특성에 맞는 현장조사 추진 등 연구추진일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 연구팀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과제특성에 맞는 현장조사 추진 등 전반적으로 연구수행 전략이 양호한 경우
3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 연구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과제특성에 맞는 현장조사 추진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연구수행전략을 일부 변경해야만 최종 연구성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 연구팀간 협조체계 및 과제 특성에 맞는 연구수행 전략 미비로 전체적인 연구수행전략을 새롭게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 연구팀간 협조체계 및 과제 특성에 맞는 연구수행 전략이 매우 미비하여 최종연구 성과 도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수행전략이 부재하여 과제에서 목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4) 계획의 준수도
5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별로 연구계획 및 추진 일정을 준수하여 연구추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매우 기대되는 경우
4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별로 연구계획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연구추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별로 연구계획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연구추진이 진행되었으나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서 일부 계획 및 추진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별로 연구계획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연구추진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연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연구 성과 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목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5) 환경변화의 대응 정도
5점	연구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최종 도출될 성과의 정책적인 변화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최적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계획 수정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최종 도출될 성과의 정책적인 변화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연구계획 수정 등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적인 변화 또는 시장 상황에 미온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연구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2점	연구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적인 변화 또는 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최종 성과물의 활용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에 따른 과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변화 또는 시장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과제 수행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에 따른 과제 수행,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구분	6)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5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양계질병관리 세부 과제와 IT분야 세부과제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고 세부과제와의 업무분담 및 추진 내용이 매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양계질병관리 세부 과제와 IT분야 세부과제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고 세부과제와의 업무분담 및 추진내용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양계질병관리 세부 과제와 IT분야 세부과제와의 연계성은 우수하나 세부과제와의 업무분담 및 추진내용이 일부 미흡하여 연구계획을 보완할 경우 연구수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양계질병관리 세부 과제와 IT분야 세부과제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세부과제와의 업무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계획서에 따른 세부과제별로 분담하여 연구를 추진하지 않고 특정 세부과제에서만 연구가 추진되는 경우
0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구성이 적합하지 않아 연구결과 도출이 어려워 연구실패가 우려되는 경우

▶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

구분	7) 연구성과목표의 달성
5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100% 이상)
4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근접하게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80~100%)
3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0~80%)
2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달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0~60%)
1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달성이 일부만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10~40%)
0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달성이 전혀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0%)

구분	8)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5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최종 연구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 기술이전, 시제품 생산, 농가보급 등의 현장적용이 이루어져 실용화 되고 있는 경우
4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최종 연구결과 중 일부 연구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농가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3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를 연구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있고 실용화를 위한 특허 출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를 연구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나 실용화를 위한 특허 출원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를 연구계획서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실용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연구성과 도출을 통한 실용화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9)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5점	해당연차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 국가적으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점	해당연차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가 실용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적으로 파급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해당연차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가 실용화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해당연차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가 실용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해당 연차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의 실용화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적 파급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해당 연차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도출이 없어 산업적 파급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업의 특성

구분	10)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5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추진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추진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연차에서 요구하는 성과도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추진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성과도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변화 및 실험결과에 따라 연구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2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추진 계획 및 일정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여 해당연차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성과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추진 계획 및 일정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더 이상 연구추진을 하더라도 최종 연구성과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추진 계획 및 일정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해당 연차의 성과로 판단하더라도 연구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2. 종합검토의견

- ▷ (중복성 검토의견) 평가대상 과제에 중복여부를 검토하고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등은 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중복으로 판단되는 과제는 중복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작성해 주십시오.
- ▷ (연구개발비 적정성 여부) 연차실적계획서에서 제시한 총 정부 연구비, 차년도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을 검토하여 조정 연구비와 특이사항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 (종합적 조치) 질문에는 “계속수행”, “조기완료”, “중단(성실, 불성실)에 체크
- “종합적 조치”에 대한 의견은 세부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계속수행”으로 판단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연구수행에 필요한 보완의견을 충실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 “조기완료”, “중단”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와 중단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평가예시는 연차실적보고서의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가. 연구과제의 유사·중복성 검토의견

- 작성예시① 유사·중복성이 없는 과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 FRIS를 통해 해당 연차실적계획서의 연구내용 및 범위를 비교·검토한 결과 연구내용이 창의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농림수산물분야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작성예시② 유사·중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 FRIS를 통해 해당 연차실적계획서의 연구내용 및 범위를 비교·검토한 결과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2009년부터

수행중인 “양계농가 질병관리 대응 매뉴얼 미 시스템 개발”과 연구방법론에서 매우 유사하여 중복성이 높은 과제로 판단됨. 해당 과제는 2011년부터 추진한 과제로서 유사한 연구내용은 제외하여 연구를 추진하거나 연구 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나. 연구개발비 적정성 여부

구 분	총 정부지원연구비	차년도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
평가내용	300,000천원	100,000천원	3년
조정내용	25,000천원	75,000천원	3년
특이사항	총액 50,000천원 감액	2년차 75,000천원 3년차 75,000천원	3년

다. 종합적 조치

- 계속수행 조기완료 중단(성실, 불성실)
- 계속 수행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작성예시> ‘계속수행’ 의견일 경우

- **(연구목표의 달성)**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세부내용(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 등)에 대해 연차별 목표달성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만으로도 양계생산농가에서 사전에 질병발생을 사전에 제어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손실을 방지하게 되어 경영안정 및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연차실적계획서에 따르면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의 2개 핵심 과제(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난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의 세부 기술인 병아리 생산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 모형화 및 식별체계 개발과,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이 2차년도 연구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차년도에는 식별체계 개발연구(양계 질병 연구팀)에서 수행하고 해당결과를 바탕으로 3차년도에 정보시스템 구축(IT 연구팀)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 수행방법으로 판단됨.

○ 조기완료, 중단 시 그 이유를 서술하여 주십시오.

<작성예시> ‘조기완료, 중단’ 의견일 경우

- **(기술개발의 실용화)** 해당연구과제에서 제시한 ‘실용화 성과’인 SCI급 논문 2편은 과학적 성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용화 성과지표는 아님. 또한 현재까지 개발된 연구결과 및 성과로는 본 과제의 RFP에 따른 실용화 및 산업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계속 연구가 수행되더라도 실용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연구범위)** 연구계획서상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 이외의 부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부가적인 연구가 본 연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전혀 다른 연구로 판단되어 목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타 용도로 연구를 추진함에 따라 목적 외 연구비 집행이 의심됨으로 연구의 중단이 필요함.

참고자료 10. 중간공개발표평가 작성예시

▷ (예시사례)

- ▶ 과제명 :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기간 3년 이내, 연구비 3억 이내)
 - (필요성) 농가에서는 일정기간 사육 후 난계대 질병이 확인될 경우 도태·폐기하므로 국내 양계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비용 손실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화장·종계장과 농장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개발목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건강한 닭 사육을 통한 축산농가 보호 및 식중독 원인균의 오염요인을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 마련 및 산업화
 - (연구범위 및 내용)
 -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구축(난계대 질병 국내 실태 조사, 병아리 생산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 모형화 및 식별체계 개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개발)
 - 난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종계장 및 실용계농장 사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
 - (과제구성요건)
 - 산업체 참여 필수/ 3P 분석을 통한 기 수행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화 전략 제시 필수

□ 종합평가(점수제)

▶ 연구수행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구분	1) 목표의 중간달성도
5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을 충족하고 이를 초과하여 기술개발이 진행된 경우
4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전반적으로 달성된 경우
3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80%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나 연구추진 실적이 다소 미흡하여 연구계획의 변경을 해야만 최종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2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50% 미만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전체적인 연구 계획의 수정을 통해서만 최종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1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30% 미만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계속적인 사업 추진을 하더라도 최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0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구분	2) 연구범위와 내용의 타당성
5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를 초과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전체연구 성과 도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내용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계획서상의 연구범위의 오류로 인해 연구내용의 방향 재설정기 필요한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 내에서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연구내용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 이외의 부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최종연구 성과 도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와 전혀 다른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목적인 연구결과의 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구분	3) 연구수행 전략의 적정성
5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 연구팀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과제특성에 맞는 현장조사 추진 등 연구추진일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 연구팀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과제특성에 맞는 현장조사 추진 등 전반적으로 연구수행 전략이 양호한 경우
3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 연구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과제특성에 맞는 현장조사 추진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연구수행전략을 일부 변경해야만 최종 연구 성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 연구팀간 협조체계 및 과제특성에 맞는 연구수행 전략 미비로 전체적인 연구수행전략을 새롭게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 연구팀간 협조체계 및 과제특성에 맞는 연구수행 전략이 매우 미비하여 최종연구 성과 도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수행전략이 부재하여 과제에서 목적인 연구결과의 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4) 계획의 준수도
5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별로 연구계획 및 추진 일정을 준수하여 연구추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이 매우 기대되는 경우
4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별로 연구계획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연구추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별로 연구계획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연구추진이 진행되었으나 양질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서 일부 계획 및 추진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세부과제별로 연구계획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연구추진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연구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연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연구 성과 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목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5) 환경변화의 대응 정도
5점	연구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최종 도출될 성과의 정책적인 변화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최적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계획 수정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최종 도출될 성과의 정책적인 변화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연구계획 수정 등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적인 변화 또는 시장 상황에 미온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연구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2점	연구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적인 변화 또는 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최종 성과물의 활용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에 따른 과제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변화 또는 시장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과제 수행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에 따른 과제 수행,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구분	6) 연구팀 구성의 적합성
5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양계질병관리 세부과제와 IT분야 세부과제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고 세부과제와의 업무분담 및 추진내용이 매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양계질병관리 세부과제와 IT분야 세부과제와의 연계성이 우수하고 세부과제와의 업무분담 및 추진내용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양계질병관리 세부과제와 IT분야 세부과제와의 연계성은 우수하나 세부과제와의 업무분담 및 추진내용이 일부 미흡하여 연구계획을 보완할 경우 연구수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양계질병관리 세부과제와 IT분야 세부과제와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세부과제와의 업무분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적인 연구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계획서에 따른 세부과제별로 분담하여 연구를 추진하지 않고 특정 세부과제에서만 연구가 추진되는 경우
0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구성이 적합하지 않아 연구결과 도출이 어려워 연구실패가 우려되는 경우

▶ 연구의 기대효과에 대한 충족도

구분	7) 연구성과목표의 달성
5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100% 이상)
4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근접하게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80~100%)
3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0~80%)
2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달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0~60%)
1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달성이 일부만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10~40%)
0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달성이 전혀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0%)

구분	8)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
5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최종 연구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 기술이전, 시제품 생산, 농가보급 등의 현장적용이 이루어져 실용화 되고 있는 경우
4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최종 연구결과 중 일부 연구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농가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3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를 연구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있고 실용화를 위한 특허 출원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를 연구계획서에 따라 수행하고 있으나 실용화를 위한 특허 출원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를 연구계획서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실용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연구성과 도출을 통한 실용화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9)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5점	해당연차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 국가적으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점	해당연차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가 실용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적으로 파급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해당연차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가 실용화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해당연차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가 실용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해당 연차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의 실용화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적 파급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해당 연차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도출이 없어 산업적 파급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사업의 특성

구분	10)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5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추진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추진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해당연차에서 요구하는 성과도출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추진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성과도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환경변화 및 실험결과에 따라 연구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경우
2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추진 계획 및 일정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여 해당연차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성과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추진 계획 및 일정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더 이상 연구추진을 하더라도 최종 연구성과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추진 계획 및 일정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해당 연차의 성과로 판단하더라도 연구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 소명내용에 대한 의견

- ▷ 소명내용이 정당한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에 체크
- ▷ 소명내용에 대한 의견은 세부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명한 내용이 정당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 소명한 내용이 정당한가 ?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소명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작성예시① ‘그렇다’ 의견일 경우
 - **(연구목표의 달성)** 해당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안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세부내용(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 등)에 대해 연구책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연차별 목표달성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만으로도 양계생산농가에서 사전에 질병발생을 사전에 제어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손실을 방지하게 되어 경영안정 및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중간서면평가 결과 1세부과제만 연구가 진행되고 2세부과제의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1·2세부과제 연구책임자와의 질의·응답 및 연구결과 분석을 통해 연구계획서와 같이 2세부과제는 1년차에서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가 및 시장조사가 주요 임무로서 추진 일정에 부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작성예시② ‘그렇지 않다’ 의견일 경우
 - **(기술개발의 실용화)** 해당연구과제에서 제시한 ‘실용화 성과’인

SCI급 논문 2편은 과학적 성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용화 성과지표는 아님. 또한 현재까지 개발된 연구결과 및 성과로는 본 과제의 RFP에 따른 실용화 및 산업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계속 연구가 수행되더라도 실용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연구범위)** 연구계획서상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 범위 이외의 부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부가적인 연구가 본 연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전혀 다른 연구로 판단되어 목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타 용도로 연구를 추진함에 따라 목적 외 연구비 집행이 의심됨으로 현장조사를 통한 연구비 회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종합적 조치

- ▷ “종합적 조치” 질문에는 “계속수행”, “조기완료”, “중단(성실, 불성실)”에 체크
 - “종합적 조치”에 대한 의견은 세부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계속수행”으로 판단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연구수행에 필요한 보완의견을 충실하게 기술하여 주시고 바랍니다.
 - “조기완료”, “중단”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와 중단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차실적계획서에서 제시한 총 정부연구비, 차년도 정부지원 연구비, 총 연구기간을 검토하여 조정연구비와 특이사항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 * 해당 평가예시는 연차실적계획서의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계속수행 조기완료 중단(성실, 불성실)

- 계속 수행시 연구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작성예시> ‘계속수행’ 의견일 경우

· **(연구목표의 달성)**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세부내용(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 등)에 대해 연차별 목표달성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만으로도 양계생산농가에서 사전에 질병발생을 사전에 제어하여 생산성 향상 및 비용손실을 방지하게 되어 경영안정 및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연차실적계획서에 따르면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의 2개 핵심 과제(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난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의 세부 기술인 병아리 생산추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 모형화 및 식별체계 개발과,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이 2차년도 연구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차년도에는 식별체계 개발연구(양계 질병 연구팀)에서 수행하고 해당결과를 바탕으로 3차년도에 정보시스템 구축(IT 연구팀)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 수행방법으로 판단됨.

○ 조기완료, 중단 시 현장조사가 필요한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조기완료, 중단 시 그 이유에 관한 의견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작성예시> ‘조기완료, 중단’ 의견일 경우

· **(기술개발의 실용화)** 해당연구과제에서 제시한 ‘실용화

성과'인 SCI급 논문 2편은 과학적 성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용화 성과지표는 아님. 또한 현재까지 개발된 연구결과 및 성과로는 본 과제의 RFP에 따른 실용화 및 산업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계속 연구가 수행되더라도 실용화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연구범위)**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 이외의 부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부가적인 연구가 본 연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전혀 다른 연구로 판단되어 목적한 연구결과 도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타 용도로 연구를 추진함에 따라 목적외 연구비 집행이 의심됨으로 연구의 중단이 필요함.

○ 연구개발비 적정성 여부

구 분	총 정부지원연구비	차년도 정부지원연구비	총 연구기간
평가내용	300,000천원	100,000천원	3년
조정내용	25,000천원	75,000천원	3년
특이사항	총액 50,000천원 감액	2년차 75,000천원 3년차 75,000천원	3년

참고자료 11. 최종평가 작성예시

▷ (예시사례)

- ▶ 과제명 :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연구기간 3년 이내, 연구비 3억 이내)
 - (필요성) 농가에서는 일정기간 사육 후 난계대 질병이 확인될 경우 도태·폐기하므로 국내 양계산업의 생산성 저하와 비용 손실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화장·종계장과 농장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개발목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견강한 닭 사육을 통한 축산농가 보호 및 식중독 원인균의 오염요인을 사전에 제어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 마련 및 산업화
 - (연구범위 및 내용)
 -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구축(난계대 질병 국내 실태 조사, 병아리 생산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생산·유통 모형화 및 식별체계 개발, 난계대 질병관리시스템 개발)
 - 난계대 질병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종계장 및 실용계농장 사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 개발)
 - (과제구성요건)
 - 산업체 참여 필수/ 3P 분석을 통한 기 수행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화 전략 제시 필수

□ 종합평가

▶ 연구수행결과 목표의 달성도

구분	1) 연구목표의 달성도
5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최종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을 충족하고 이를 초과하여 기술개발이 진행된 경우
4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전반적으로 달성된 경우
3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80% 수준으로 이루어졌으나 연구추진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50% 미만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30% 미만 수준으로 이루어졌고 최종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0점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추진실적 및 목표성과 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실패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2) 연구수행 방법의 타당성
5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를 초과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전체연구 성과 도출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계획서상의 연구범위의 오류로 인해 연구결과가 일부만 도출된 경우
2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 내에서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연구내용의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 이외의 부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가 최종연구 성과 도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상 단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의 연구범위와 전혀 다른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목적인 연구결과의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수행결과 연구성과의 충족도

구분	3) 연구성과의 실용성(산업화 가능성)
5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최종 연구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 기술이전, 시제품 생산, 농가보급 등의 현장적용이 이루어져 실용화 되어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4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최종 연구결과 중 일부 연구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농가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3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를 연구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였고 연구종료 후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특허 출원(등록)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를 연구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였으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특허 출원(등록)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를 연구계획서에 따라 추진되지 못하였고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점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를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한 성과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한 연구로 판단되는 경우

구분	4) 연구성과 목표의 달성도
5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100% 이상)
4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근접하게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80~100%)
3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0~80%)
2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달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0~60%)
1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달성이 일부만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10~40%)
0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각 연차별 정량적·정성적 연구성과 목표 수준에 달성이 전혀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0%)

구분	5)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5점	연구개발을 통해 최종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져 국가적으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점	연구개발을 통해 최종적인 성과가 실용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적으로 파급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개발을 통해 최종적인 성과가 실용화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하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점	연구개발을 통해 최종적인 성과가 실용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산업적 파급효과가 한정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개발을 통해 최종적인 성과의 실용화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적 파급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개발을 통해 최종적인 성과 도출이 없어 산업적 파급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연구수행의 성실성

구분	6) 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내용 이행여부
5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연구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제시한 계획보다 초과 연구를 실시하여 연구비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100% 이상 이행)
4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연구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목표한 연구개발을 완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80~100% 수준 이행)
3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연구내용을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나 목표한 연구개발 중 일부기술의 개발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60~80% 수준 이행)
2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연구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목표한 연구개발 중 상당부분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40~60% 수준 이행)
1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연구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목표한 연구개발 중 아주 일부분의 기술 개발만이 이루어진 경우(40% 미만 수준 이행)
0점	연구계획서상에 제시한 연구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아 목표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또는 연구개발이 실패했다고 판단되는 경우(0% 수준 이행)

▶ 정책연계성

구분	7) 농림수산물식품 정책과의 연계성
5점	최종 개발된 연구결과 및 기술이 농림수산물식품산업 정책과의 연계성에서 매우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100% 이상 수준)
4점	최종 개발된 연구결과 및 기술이 농림수산물식품산업 정책과의 연계성에서 전반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80% 이상 수준)
3점	최종 개발된 연구결과 및 기술이 농림수산물식품산업 정책과의 연계성에서 대체적으로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60% 이상 수준)
2점	최종 개발된 연구결과 및 기술이 농림수산물식품산업 정책과의 연계성에서 일부분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0% 이상 수준)
1점	최종 개발된 연구결과 및 기술이 농림수산물식품산업 정책과의 연계성에서 미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0% 미만 수준)
0점	최종 개발된 연구결과 및 기술이 농림수산물식품산업 정책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0% 수준)

▶ 사업의 특성

구분	8)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5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계획 및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종 성과도출이 이루어져 실용화 및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계획 및 일정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고 성공적인 성과도출이 이루어졌으나 추가적인 후속연구를 통해서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2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계획 및 일정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적절함(일부) 성과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계획 및 일정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였고 최종 연구성과물 도출이 미미하여 실용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점	연구계획서의 연차별 연구계획 및 일정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고 못하였고 최종 연구성과물 도출이 성과로 판단하더라도 연구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 연구과제계획서상의 연구내용 이행

▷ 세부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연구과제계획서에 제시된 연구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구체적으로 미진한 연구내용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해당 평가예시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

- **(연구추진 현황)**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를 통해서 제1세부과제에서 최종 개발예정이었던 병아리 생산·유통 모형화 및 식별체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개발된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수준으로는 실질적인 현장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제2세부과의 병아리 생산추적 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있어 IT시스템 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종계장 정보시스템 구축이 미완성 되어 활용이 힘들 것으로 사료됨.
- **(연구성과 도출)** 본 과제의 연구성과 목표는 기술이전 1건, 영농지도 2건, 특허출원(등록) 2(2)건, SCI급 논문 2편을 정량적인 성과로 제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영농지도 2건과 국내논문 2편만 성과로 제출하여 성과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중간평가 지적사항 미보완)** 본 과제의 2년차 중간평가에서 연구범위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연구계획서에 따라 2년차에서 추진하지 못한 연구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최종보고서에서 이를 제외하여 발표한 것으로 판단됨. 중간평가 보완사항 추진내용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요 연구성과 도출

가. 산업적 성과

▷ 현재까지 연구결과에 의한 실용화·산업화 성과가 있을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평가예시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

- **(실용화)**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본 과제를 통해 병아리 생산체계 구축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2012. 2월에 (주)하림으로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음.
- **(실용화)** 본 시스템이 (주)하림의 병아리 생산시스템에 적용될 경우 병아리 1마리당 20원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 하림의 병아리 생산규모를 감안하면 연간 100억 원 내외의 로열티 수입이 예상되는 등 산업화 성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농가적용)** ‘생산·유통 모형화 및 식별체계 개발’ 성과는 전국 도농업기술원을 통해 지역의 양계농가에 보급(매뉴얼 형태)함으로써 양계농가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과학기술적 성과

▷ 당장 실용화 연계성은 낮지만 기술의 잠재성이 크고 유망 실용화 기술로 발전할 핵심기술이 있을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평가예시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

- **(논문성과)** “양계농가의 식중독 원인균의 오염요인을 사전 제어에 관한 연구”가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 학술지인 국제 생물과학회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iological Sciences」에 게재되었고 그 외 5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하는 등 과학기술성 성과를 많이 도출하였고 이와 같은 학술적 기반을 통해 향후 실용화 기술로 발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허성과)** “병아리 생산추적 스마트 시스템 연계”와 관련된 특허가 출원되어 있고 해당 특허 등록이 완료될 경우 기술이전을 통해 실용화 될 수 있는 기술로 판단됨

□ 본 과제 성과활용에 대한 건의

▷ 연구기관, 연구자, 참여기업이 본 과제의 실용화·산업화 등 연구성과 활용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평가예시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작성예시

- **(연구성과 활용)** 현재 해당 연구성과는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실용화· 및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술의 특성상 정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보급이 확산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후속연구에 대한 의견)** 난계대 질병관리에 대한 IT 시스템은 구축되었으나 양계농가에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개발과 같은 후속 연구의 추진이 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 ▷ 세부평가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평가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불량”, “매우불량”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불량” 및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종보고서 제시된 연구내용 중 추가연구를 통해 최종보고서에서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 해당 평가예시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가상으로 평가한 예시임

○ 연구수행 결과의 종합적 평가(“평가서 작성상의 참고사항” 참조)

매우우수 우수 보통 불량 매우불량

○ 불량 및 매우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한 이유

○ 작성예시

· **(불량 및 매우 불량에 대한 의견)** “난계대 질병관리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한 본 과제의 경우 연구계획서에 따른 성실한 연구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업추진 시 계획한 성과목표인 지식재산권(2건), SCI급 논문(2편), 기술이전(1건)을 대부분 달성하지 못해 연구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평가에서 불량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최종보고서의 수정·보완사항

<작성예시>

- **(수정사항)** 최종발표 PPT에서 제시한 “난계대 질병시스템”의 농가 적용실험 결과가 최종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최종보고서의 수정이 필요함. 또한 최종보고서 내용이 1세부과제 성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2세부과제 성과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보완사항)** “병아리 생산 및 개체식별 시스템” 구축연구는 실험실 단위의 결과로서 참여기업인 (주)하림의 생산공정에 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현장적용 실험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최종보고서 27P, 54P에 제시된 실험데이터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가 실험을 통해 오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매뉴얼
-평가위원용-

-
-
- ▣ 발행일 : 2012년 3월 13일 발행(초판)
 - ▣ 발행처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제도기획실)
 -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6(관양동 우양타운 6층)
-
-

이 책에 수록된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117-5 우양빌딩 5층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도기획실
전화 : 031-420-6752~4 팩스 : 031-425-6443

www.ipet.re.kr